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反성폭력 학교



my-da.

1999. 8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反성폭력 학교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을 위한

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1. 2000년대 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2. 2000년대 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3. 2000년대 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1. 2000년대 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2. 2000년대 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1999. 8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

12월 18일 1996년 13월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도전 특공상

8 9991

임모상사 11월 11일
11월 11일

차 레

첫째할

연사말 - 반성폭력 학교를 준비하며

성폭력의 개념과 성폭력 학제제정 운동의 방향

학내 성폭력의 실태 - 대학-성폭력 박물관 : 있는 것이 없다?!

1. 고6에 의한 성폭력
2. 학생에 의한 성폭력
3. 공권력에 의하여 : 96년 안동권 사태 진압과정에서 성폭력 사건

문대 여학생 화장실 배지자살을 통해 시작된 성폭력 사례

둘째할

학내에서의 성폭력 대처 방법

- 성폭력, 이렇게 대처하자!

셋째할

학내에서의 성폭력 대처 사례

1. 96년 이대 대동계에서와 그대 집단난동사건
2.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성폭력 사건

신어가는 페어지 - 스미스씨 이야기

넷째할

타 학교의 반성폭력 운동 - 자치교 학생운동 중심으로

고대 법대 자치교 학생운동

서울대 사외대 특별 학생자치 제정운동

연세대 사외대 자치교

성균관대 사태 성폭력 내기

서울대 성폭력 예방공간 선언운동

<별첨자료 1> 고대 법대 자치교 제안

<별첨자료 2> 성균관대 사태 성폭력 내기

인사말

반성폭력 학교를 준비하며

문대 여성모임 '모반', 장임수지

"그래도 문대는 좀 낫지 않나?"

"문대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어?"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현실도 그럴까요?

반성폭력학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성폭력은 지극히 작은 일이고 개인적 문제이며 사적인 일로 치부되어 어떤 일이 있는지, 또 그런 일들이 왜 성폭력인지, 그것이 왜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 본 적 없다는 것이 오히려 현실일 것입니다. '성'이라는 문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다른 위치에 서 있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존재하는 한 성폭력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한 사회 내에서 여성이 다수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여전히 성적 소수자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자유롭다고 여겨지는 문과대에서 문우인들도 역시 성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운동'은 문과대 안에서부터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장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바로 나 스스로부터, 내 주변부터 바꾸어나가려는 운동입니다. '자치규약'은 성폭력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해보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대학 내에서 성폭력적 문화를 제고하고, 성폭력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들 모두 - 학생, 교직원, 교수 등 - 에게 강제력을 가지는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하는 움직임도 이미 많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성폭력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과 구성원들 간의 논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또 다른 폭력/억압으로 밖에 작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반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운동은 좀 더 올바른 학칙을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반'에서는 지난 5월부터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운동의 의의를 알리는 자료를 붙였으며, '나는 모든 성폭력에 반대한다' 딱 판매, 성폭력에 대한 문우인의 생각을 알아보는 스티커 설문조사, 성폭력 사례들을 알아보기 위한 화장실 백지자로 설치, 사례 공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반성폭력 학교' 역시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번 반성폭력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성폭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성폭력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연세 - 성폭
남성중심적 사회
안정교육, 다양교육,
금지물기

첫머리

성폭력의 개념과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방향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0. intro

가나긴 성폭력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성폭력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 가해자는 단지 개인으로만 여겨져 왔다. 비윤리적인 가해자와 자신의 몸을 타인의 사선에 무책임 노출시킨 피해자,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도출되는 문제로서의 성폭력은 그동안 성폭력의 담론을 이루었던 요소들이었다. 그러한 담론 속에서 오히려 폭력을 당한 자가 죄책감과 '정숙치 못한 여자'로 낙인찍히게 되고 가해자는 어쩔 수 없는 성충동의 희생자로 존재한다. 여성의 몸을 유린하는 성폭력의 담론 속에는 '여성'이라는 범주는 철저히 배제된 채 남성중심적인 성담론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체계는 1998년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대학이라는 공간을 규율한다.

이 글에서는 대학 사회 역시 사회 공동체의 남성 중심적이고 성기중심적인 성폭력 담론 속에 위치한다는 전제 속에서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려 한다. 그러한 전제 속에서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은 역으로 대사회적인 영향 또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대학 내

성폭력의 실태를 직시하는 속에서 그간에서 작동하는 남성중심적인 성폭력 담론의 해체를 통해 성폭력 담론을 재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볼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성적 자율권 확보를 위한 운동으로 제안된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을 통해 학내 성폭력과 이를 근절해내기 위한 다양한 흐름들이 교목하고 논의될 수 있었으면 한다.

1.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

1-1. 성폭력의 영역=대학? 대학은 성폭력 박물관이다.

올 해 4월에 '대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여성연대회의)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학 공동체 내에서

1) '학내 성의식과 성폭력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는 서울·경기지역 소재 12개 대학 여자 605명, 남자 434명을 대상으로 98년 4월 둘째주부터 3주간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 공청회 자료집(1998.5.14.)'과 '연대회의 자료집(1998.8.21.)'

의 성폭력 발생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즉, 전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의 빈도에 비해서 대학 사회에서는 성폭력의 발생이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학 구성원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흔히 성폭력의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여학생들과 (가해자라고 예상되는) 남학생들의 대답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인데, 여학생의 경우 '대학 내에서 성폭력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문항에 60% 이상이 동의를 하였으나 남학생의 경우 동의한 수는 전체의 30%에 불과했다. 이는 구체적 성폭력 유형과 관련된 문항에 대한 결과를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성폭력 중 언어적 유형(예를 들면 여성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신체나 외모에 대한 조롱 등)인 경우 전체 여학생의 약 85%, 비언어적인 유형(예를 들면 여성의 신체를 훑어보는 행위나 음란물을 부착하는 행위 등)인 경우 전체 여학생의 약 6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다른 경험으로 인해 성폭력 인식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나 실제 범죄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가를 기준으로 파악한다고 할 때 앞에서 제시한 통계 수치는 진리의 전당인 대학이 결코 성폭력의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동안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성역이라 여겨져 왔던 대학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인 공문화된 계기는 93년 발생했던 서울대 화학과 신경휴 교수 성희롱 사건²⁾이었다. 그 후 수많은 사건(그동안 성폭력이

에 실려있다.

2) 이 사건은 흔히 '우조교 사건'이라 불리며 여론화되었던 서울대 화학과 신경휴 교수에 의한 조교 성희롱 사건을 지칭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사건이 여론화되는 과정 속에서 가해자인 신경휴보다는 피해자인 우조교의 문제로 무게가 실리면서 사건의 지칭하는 언어가 피해자의 이름인 '우조교'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현재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을

아니라고 치부되어서 묻혀 있었던 사건들까지도)들이 문제제기 되었는데 그 예로 이대 대동제에서의 고대생 난동 사건, 시립대-동덕여대 MT사건, 이대 온라인 성폭력 사건³⁾ 등이 있다. 그동안 성폭력 사건은 도덕성이 결여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면서 지식인들의 공간인 대학 사회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성폭력은 한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체 내의 집단적인 성문화와 성담론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가해자에게는 집단적인 성문화의 모순을 행동으로 체현한 개인으로써 당연히 책임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성문화를 묵인하고 재생하는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간과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편파적인 사고이다) 예를 들어 고대생의 이대생에 대한 집단 난동사건을 보자. 난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고대생들이 도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대생들에게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가? 오히려 집단적인 폭력을 조장하는 고대의 축제문화에 문제제기할

바라보는 시각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즉, 다른 (범죄) 사건과 달리 성폭력 사건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회적인 비난이 모아지게 되고 그 속에서 피해자는 2중, 3중의 성폭력에 대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는 성폭력을 사회적인 범죄로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 특히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을 문제제기하기 위해 신교수 퇴진과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관학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98년부터 이 사건을 '신경휴 교수 사건'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3) 1998년 초에 발생한 사건으로 pc통신의 대화방에서 이대의 한 여학우에게 음란한 쪽지를 보내고 대화방에서 나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음란한 쪽지를 보낸 사건이다. 이후 가해자는 정식으로 실명으로 된 사과자보를 붙였으며, 통신회사에서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가해자의 아이디를 회수하였다. 이 사건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해 온 온라인 성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때 당시 고대생의 집단에 여학생을 또한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학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성폭력 사건은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에 기반한다. 교수와 제자 사이의 신체적 접촉을 허용하는 문화, 강의 시간과 사적인 자리에서 성적인 말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문화, 집단으로 재미를 위해 힘의 우위를 가지고 상대방의 공간을 마음껏 짓밟을 수 있는 문화,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성적인 폭언을 익명이라는 방패를 통해 내뿜을 수 있는 문화...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와 이를 조장하는 왜곡된 성담론이 한 성이 다른 성을 거리낌없이 짓밟을 수 있는 상황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것이다.

1-2 대학 내 성폭력의 제2, 제3의 피해

사회의 집단적인 성문화와 성담론의 결과물인 성폭력이 대학사회에서 또한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앞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학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사회의 그것과는 또 다른 특이성을 지니는데, 그것은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의 침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학습권에 대한 침해도 동반한다는 것이다.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은 (교수-학생간의 성폭력에 있어서) 성폭력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알게 또는 모르게 피해자의 학점이나 학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학업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 저하 및 불쾌한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 생활을 포기하게 만든다. 학업 생활의 포기는 결국 대학에 온 목적인 자기계발이나 사회진출의 기회를 막아버려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까지 한다. 또한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또 다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교수와 제자간의 성폭력 사건⁴⁾은 남성과 여성간의 권력 불평등한 상황에 더하여 교수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와 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자라는 관계의 특수성이 학생 자신의 인생을 걸고 문제를 드러내어 풀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므로 피해자는 이중의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성폭력 담론의 재구축

2-1 사회적·법적인 성폭력 개념의 성폭력성

성폭력은 사회·공동체의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와 왜곡된 성담론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로만 치환되어 왔다는 사실은 앞서 강조하였다. (여기서의 개인은 비도덕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피해자까지도 포괄하는 의미로 사회적으로는 받아들여진다)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와 성담론 속에서 구성되는 성폭력의 담론은 그 자체로 성폭력적이다. 즉 피해자의 언어나 경험이 배제된 채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는 성폭력 담론은 또 다른 성폭력을 재생산하는 기제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남성중심적이고 성기중심적인 성폭력 담론의 형태와 그 폭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려 한다.

첫째 성폭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 여성에 대한 범죄라기 보다는 정조의 문제로 사고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몸을 여성의 인격과 정체성이 구현된다는 관점에서 포착하기보다는 임신과 출산을

4) 98년 4월에 실시하였던 설문조사에 의하면 강간의 경우에 교수에 의한 경우가 전체 2%로 교직원(1.2%), 천한 동기·선후배(1.5%), 안면있는 동기·선후배(1.1%), 모르는 사람(1.8%), 타학교 구성원(0.5%)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해 가족이나 가문 등의 공동체를 생물학적으로 재생산하는 '그릇'으로만 보는 관념과 관련된다. 여성의 성은 역사적으로 남성지배권력과 자본주의의 사회구조를 유지, 재생산하는 기반으로 하는 결혼과 가족제도에서 더욱 억압된다. 남성의 상속권과 가문의 계승을 위한 생식의 성이 강조되고 혈통의 순수성은 더욱 중요하게 되어 여성의 순결과 정절은 절대적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계와 부권을 토대로 한 가족관계는 남녀간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구조 속에서 남성은 여성의 성을 소유하고 통제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박탈해 버린 것이다. 남성중심적인 성담론 체계에서 성폭력의 피해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소유하는 정조이자 순결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성담론의 양태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고스란히 나타난다. 현행 성폭력에 관한 법이 보호법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여성의 정조나 선량한 성품속이다. 그러므로 성폭력의 범죄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행동여부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여성의 피해라는 근거를 제시해야만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사회적·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폭력의 담론 속에서 여성은 그녀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이러한 봉건적인 성담론 속에서 여성의 몸은 정조나 재생산 기능을 떠나서는 사고될 수 없는 것이다.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며 그녀의 삶과 정체성의 터전이다. 그리고 성폭력은 스스로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둘째, 성폭력의 행위들은 각기 분리된 것으로 사고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성폭력의 유형을 분류할 때,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강간, 강제추행, 성

희롱, 성적 괴롭힘으로 개념화하여 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법에서 잘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구분짓는 기준은 성기가 삽입되었는가에 따라만 성기가 삽입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이므로, 실제 여성의 성기 안에 남성 성기 이외의 다른 이물질이 삽입된 경우는 강간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고 체계 안에서는 피해자의 심신 손상이나 폭력에 대한 경험의 여부는 성폭력을 파악할 때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접근은 여성을 배제시키고 폭력 속에 노출시키게 되며 또한 각각의 질적인 구분을 시도하여 성폭력의 심각도를 구분짓는다.

성폭력의 양분법적이고 질적인 접근은 성기중심적인 성담론을 그 기반으로 한다. 성폭력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폭력을 당한 것이다. 성폭력의 경험은 여성에게 매우 넓은 스펙트럼에 걸친 행동들의 연속적 총체이다. 실제로 성폭력은 여성이 경험하는 넓은 범위의 학대와 폭력이며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성폭력의 인식은 각기 분리되며 더 심각한 성폭력과 덜 심각한 성폭력으로 구분지어진다. 이러한 분리는 강간과 같은 특정 형태의 극단적인 양태들로 성폭력의 논의를 집중시키게 되며 이는 성폭력의 본질을 은폐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더 심각한 혹은 덜 심각한이라는 질적인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2-2 성폭력의 담론은 재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남성중심적이고 성기중심적인 성담론이 재생산하고 있는 성폭력의 담론 속에서 피해자 여성의 언어나 경험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담론은 성폭력이 모든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를 총칭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의 개념을 축소하여 문제의 본질을 은폐할 따름이다. 이러한 담론은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 혹은 성폭력의 위협에 처해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성폭력적으로 다가올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은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재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남성중심적인 성폭력 담론을 해체하고 여성의 언어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투쟁들의 과정이자 목표이다.

성폭력의 담론을 재구성하기에 앞서 전제로 삼아야 할 것은 성폭력은 분리되는 현상으로써가 아니라 경험의 연속선 상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에 기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은 모두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된 양태로 바라보며 질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성폭력의 본질을 은폐할 뿐이라는 사실은 앞에서도 강조하였다. 성폭력을 경험의 연속선 상에서 파악하는 것은 성폭력의 심각도에 대한 논의를 거부한다. 성폭력이 여성에게 주는 영향은 복합적이며, 여성이 경험하는 성폭력의 형태로부터 간단히 해석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성적 추근덤과 같이 더 많은 수의 여성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성폭력보다 강간이 더 많은 영향을 여성에게 주며 더 심각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이 자신의 경험에 어떻게 반응하고 규정하느냐,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경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에 의해 성폭력이 평가되어야 한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한 모든 행위를 총칭한다. 모든 형태의 성폭력은 심각하며, 이것들에 대해서 차별없이 반대해야 한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그의 성적 자율권·

을 침해한 행위이다.

① 성폭력의 판단 기준으로서 '동의의 문제'

현재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 성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정의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동의(피해자의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극히 남성중심적이다. 예를 들어 강간은 법적으로 '부녀', '간음', '폭력 또는 협박에 의해서'라는 세가지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세 번째의 요건인 '폭력 또는 협박에 의해서'를 판단할 때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폭력을 그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판례에서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강간의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폭력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신체의 위해를 볼사할 정도에 저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강간의 피해자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동의의 여부' 그러한 (침해)행위에 동의를 하였는가 아닌가 아닌 '저항'의 유무 그러한 (침해)행위에 죽음을 볼사할 정도로 저항을 했는가 아닌가인 것이다. 결국 재판과정에서 끊임 없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범인과 범인이 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에 관한 법의 보호법칙을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가 아닌 '정조'로 삼고 있는 현실과 결부되어 있다. 비록 성폭력에 관한 법률을 명시한 형법전에서 보호법칙을 정조로 한다는 직접적인 명시가 여성단체의 문제제기에 의해서 개정되었다

51995년 형법개정으로 인해 제32장의 정조에 관한 죄가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으며 정조라는 말이

할지라도 여전히 성폭력에 관한 법률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여성(정조를 지키는 여성)만을 보호한다'는 봉건적인 사고에서 그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제도적 인식은 실제로 표명된 여성의 거부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다. 여성의 'no'는 언제나 'yes'로 간주되며, 여성의 동의 혹은 비동의는 언제나 무시되고 있으며, 여성은 개인의 지위를 유지할 능력이 결여된 존재, 즉 동의라는 실천에 참여할 능력을 결여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⁶⁾ 이러한 인식 속에서 여성은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제를 사회에 의해 박탈당하게 되어 평생동안 성폭력의 위협 속에서 일상적인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여성들의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성취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여기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는 저항의 정도에서 판단되어서는 안되며 오직 '동의'의 여부로 파악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법제도에 있어서 성폭력 판단의 기준은 '동의'의 여부로 규정하는 작업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동의를 판단할 때 간과해서는 안

법조문에서는 사라졌으나 정조를 대신하는 그 어떤 대안적 보호법익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세부항목의 편의적 조합으로 장 제목을 삼은 이러한 식의 법 개정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성폭력특별법 역시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규정은 제시하지 않고, 단지 형법 제 27조, 270조에 해당하는 죄가 성폭력 범죄라는 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

6)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배은경, 여성과 사회 제8호, p.65. 한국여성연구회편, 창작과 비평사

되는 지점은 남녀간의 권력이 불평등한 현 사회에서 동의와 비동의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의 성예화는 가부장제의 유지 기제이며, 이는 강간이나 매춘, 포르노 같은 극단적이고 일탈적인 형태의 성적 관계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의 일상적인 성관계(외관상으로 동의의 형태로 나타나는 부부나 연인관계)에서도 나타난다.⁷⁾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가 규범화되고 성예화된 성문화에서 동의는 종속적 지위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에 있어서 '동의'에 대한 판단은 남성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을 통해 살펴 보아야 한다. 이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에 있어서 피해자가 상위자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결과를 감당할 수 없어 외관상 동의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이를 성폭력이라 명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리를 취한다. 즉 성폭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저항'의 유무가 아닌 '동의'의 여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하며, 여기서의 동의는 피해자의 자발성을 전제로 한 동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발적인 동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남녀간의

7) Bart는 이성애적인 성을 ①동성의 성(쌍방이 모두 똑같이 원하는 경우), ②이타적인 성(여성이 거절할 경우 남성에게 미안하게 느껴거나 죄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경우), ③순응적 성(안함으로 인해 오는 결과가 함으로써 오는 결과보다 나빠서 하는 경우) ④강간으로 나가는 연속선으로 개념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Kelly는 이에 동조하여, 동의적인 성과 강간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없고 압력, 위협, 강제, 힘의 연속선에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연속선의 개념은 여성이 성에 자유롭게 동의하지 않을 때 느끼는 학대의 느낌을 타당화시켜주며, 일반적으로 성폭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이트 강간과 같은 형태의, 동의라는 형식을 갖춘 관계에 있어서 성폭력이 존재함과 그것을 성폭력으로 구별할 수 있는 지점을 제시해준다.(연대회의 자료집 中 성폭력 개념, 1998)

권력이 불평등한 현 사회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성폭력의 판단기준으로서 '피해자의 경험'

성폭력의 규정에 있어서 판단지점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경험이어야 한다. '동의'라는 외관상 동일한 형태를 판단할 때 그것이 '자발적 동의'였는지 여부의 가름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성폭력의 판단 기준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에 대한 판별은 상대방인 피해자가 그 행위를 불쾌하게 느끼고 스스로의 몸에 대한 침해행위로 경험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흔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경험'이라 하였을 때 그 비논리성과 가해자(로 규정되는 자)를 배제하는 불합리성에 대하여 비판한다. 그러나 이미 '피해자의 (주관적인) 경험'이 여성의 독특한 경험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된다고 미국 법정은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1993년 해리스 사건(Harris v. Forklift Systems, Inc., 114 S.Ct. 367)이 그 예인데, 본 사건에서는 그동안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되었던 '합리적 인간'(reasonable person)이 적대적 또는 남용적이라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낄 때에는 객관적으로 적대적이고 남용적인 작업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행동이 그 또는 그녀의 심리적 복지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증명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함⁸⁾으로써 '합리적 인간'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즉 새로운 '합리적 인간'은 피해자의 위치에서 그러한 문제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였을까를 판별한다는 것이다. 또한 합리적 인간이라는 기준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이란 고정관념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8)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배은경, 여성과 사회8, p.71. 창작과 비평사, 1997

성폭력에 대한 판단은 그동안 '객관성'을 가장한 남성중심적인 판단기준 속에서 피해자의 경험이나 그에 기반한 언어를 배제한 속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러할 때, 1993년 미국법정의 '합리적 인간'에 대한 기준의 전환은 피해자의 관점을 도입했다는 지점에서 성폭력 담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도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 자율권에 대한 침해행위이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성적 자율권에 대한 침해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기서 '성적 자율권에 대한 침해'의 의미는 성적인 행위뿐 아니라 '성별(gender)에 기반한 행위' 또한 의미한다. '성적인 행위'란 단지 응시하는 행위에서부터 강간까지의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시각적(불쾌한 응시나 음란한 시선, 성적인 제스처 등), 언어적(외설적인 언급, 암시, 농담 등), 육체적(건드리기, 접촉, 애무, 포옹, 추행, 강간 등), 음란물의 전시나 낙서, 성적봉사의 요구(과도한 서비스나 예교의 요구, 술자리에서의 서비스 요구 등) 등의 행위로 말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기반한 행위'로서는 성별로 그 사람을 비하하는 행위, 성별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 혹은 위협적이거나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성차별적인 발언('여자가 하는 일은.....', '여자 주제에.....' 등)이나 여성비하적인 발언(욕설이나 반말), 고정관념적인 성별분업(차대절이나2 청소의 요구,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나 처리 등)의 강요 등 또한 성별에 기반한 성폭력이다.⁹⁾ 성폭력이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

9) 이렇게 '성별에 기반한 행위'를 성폭력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1970년대 중반경 미국의 여성운동 단체나 여성학자들에 의해 채택되어 발전되어 온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개념에서 찾

력관계를 재생산하는 기제라고 했을 때, 앞에서 언급한 '성적인 행위'와 '성별에 기반한 행위'는 서로 단절된 다른 경험의 아니며 많은 부분 그 구분지침이 모호하다. 특히 성폭력의 판단기준인 '피해자의 경험'에 있어서 모두가 억압적이고 배제적인 경험이며, 그것이 성폭력 경험의 연속선상에서 모두 성폭력으로 위치지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앞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사회적·법적으로 성폭력은 '성적 자율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정조나 순결'에 관한 침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담론 속에서는 여성의 몸이나 몸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폭력의 재해를 부녀자로 한정함으로써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남성¹⁰⁾ 또한

아볼 수 있다.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된 직무관계에 있어서 남녀간의 권력 관계뿐 아니라 직장 과 같은 위계관계가 중첩되어 성폭력이 나타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만든 조어이다. 성희롱 개념의 핵심은 성폭력을 단순히 성적 욕구에 기반한 행위가 아니라 권력의 불평등과 관련된 행위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즉, 성폭력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한정시키고 남성지배를 주장하는 기제로써 파악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희롱의 개념을 사용할 때는 성폭력이 성적 자율권에 대한 침해에 더하여 '노동권'과 '교육권'에 대한 침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수단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성희롱의 개념은 오히려 강간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성폭력을 제외한 언어적, 시각적, 육체적 성폭력을 이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성폭력이 남녀간의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남성지배를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그 개념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여성연대회의와 이 글에서는 성희롱을 특수하게 분리하여 논하지 않을 것이다.

10) 성폭력의 피해를 입는 남성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사례 분석을 보면

보호받을 수 없다. 성폭력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일 뿐이며, 남성중심적인 성폭력의 담론은 성별에 따라 차별없는 성적 자율권을 인정하고 확보해 나가는 운동을 통해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3. 여성의 성적 자율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 -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

이제 대학사회로 눈을 돌려보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학은 결코 성폭력의 성역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의 집단적 성문화와 성담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있는 남성중심적이고 성기중심적인 성폭력 담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대학구성원 대다수가 대학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의 피해자이고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을 제안한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을 처음으로 제기한 단위는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다. 그동안 대학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내의 여성운동단위들은 그 사안들에 대하여 물적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중심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각 학

피해자 중 남성의 비율이 93년에는 2.6%였던 것이, 94년 2.9%, 95년 4.8%로 증가추세에 있다. 피해자는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해자는 직장상사나 학교 상급생 등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교 내에서 학교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학내 여성운동단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사건에서는 그 해결이 어려웠으며, 사건을 해결한다고 하여도 사건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성폭력 사건의 문제해결이 지니는 한계점-사안 중심적인 해결을 통해서 성폭력 근절을 이룰 수 없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학교들은 성폭력의 사안별 해결을 넘어서 근본적인 공동체의 성담론을 재구성하기 위한 연대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연대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탄생한 것이 18개 학교의 여성운동단위가 연대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여성연대회의)이다. 96년 여성연대회의가 만들어진 이래 여성연대회의에서는 각 학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커다란 사안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서로 연대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제는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을 그 주요한 축으로 하여 다시 한걸음 나아가려 하고 있다.

3-1. 왜 학칙인가? -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의 필요성

대학 사회 내에서 학칙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학칙은 학내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자치를 탄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칙이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불구하고 학칙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학칙이 대학 공동체-학생 뿐만 아니라

교수, 교직원 까지 포괄하는 전반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자치권 확보의 수단으로 학칙을 재구성해 낼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즉 학칙이라고 하여 현재의 학칙이 가지고 있는 화석화되고 고정된 규제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가지는 '학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유연한 학칙, 즉 학내 구성원 대다수의 동의에 기반하여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그러한 행위(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가 됨을 알림으로써, 단순히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처벌만이 아닌 그 공동체 내의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의 역할까지 담보할 수 있는 학칙을 사고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처벌 뿐 아니라 공동체의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학칙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동체내의 동의에 의한 자치규약을 통해서도 그것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치규약이 아닌 자치규약적인 성격을 지닌 학칙을 사고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첫째,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은 모든 대학 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제까지 대학 사회 내에서 해결된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다. 그러한 사건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의견을 내고 이를 학교 내의 여성단위가 중재하여 의견 수렴 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왔다. 이 모든 과정은 온전히 피해자의 주된 의사와 가해자의 수용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학생 공동체내로 수렴되었다. 그러나 학생과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교직원과 교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성폭력의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 이러한 교수와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은 권력관계를 포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력의 하위에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해결이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서

을대에서 발생한 신고수 사건만 보아도 학내에서는 공문화 이상의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므로 지리한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앞의 학생과 학생 사이의 사건과 달리 학생 공동체 내의 자치규약(대화)을 통한 동의에 의한 사건 해결 또한 자치규약적인 해결임을 명시하는 바이다)에 의해 교수나 교직원이 강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 대학 사회내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그 속에서 대학 사회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 대학 사회를 벗어난 법률에 의존하거나 교수 사회 내에서의 해결을 기대하는 정도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일이 아주 오래 걸리고 해결 방법 자체도 처벌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주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성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 이루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대학 사회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며 이는 학칙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은 대학 구성원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의 문제점을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의 침해로 파악한다. 하지만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경우는 성적 자율권의 침해와 더불어 학습권-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의 침해라는 특수성을 지니게 된다. 대학 사회는 명백히 대학 구성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사회이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자신의 몸에만 권리를 침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피해자 본인이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에서 마음껏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대학 사회

의 구성 목적이 교육에 있다면 교육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마련해 주는 것은 대학당국이 책임져야 하는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대학당국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은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제 더이상 성폭력 사건을 통하여 피해자들 혹은 가해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 채 공동체 내에서 배제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권은 학칙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으며 그러하기에 대학 당국은 성폭력을 자신의 일로 떠안아 같이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은 대학내의 새로운 성문화를 사회적으로 유포시킬 수 있다. 성폭력 학칙을 통하여 예고자 하는 바는 비단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이 아니다. 전반적인 대학 공동체 내의 성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성폭력 자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학칙을 통하여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 대학 사회의 또다른 특징은 그 구성원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에 기반한 자치규약만으로 변화하는 구성원까지 떠안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순간순간 생생되어 나가는 새로운 성문화가 아니라 학칙이라는 확실한 기제의 뒷받침을 통하여 대학 공동체 내의 성문화가 끊임없이 바뀌어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학칙은 앞에서 언급한 유연한 학칙을 일컫는 것이며, 즉 후일 새로운 성문화에 의해 이제껏 사고하지 못한 성폭력의 새로운 면들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것들이 학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만들고자 하는 학칙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의 여지가 있는 유연한 학칙을 사고한다. 이러한 학칙의 뒷받침을 통하여 재생산된 대학 사회의 성문화는 사회에도 문제제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껏 대학 사회가 사회에 대하여 지녀온 선도적인 문제제기의 역할이 이러한 공동체의 새로운 성문화의 유포에서도 나타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3-2.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의 의미성(방향성)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여성의 성적 자율권 확보를 위한 '여성운동'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수많은 확장의 가능성을 지닌다. 즉 여성운동일 뿐 아니라 대학 사회 내의 대중운동이자 자치운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첫째,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여성운동의 주요한 흐름을 형성한다. 이제까지 여성연대회의는 성폭력 사건을 사안별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학 공동체 내의 지배적인 가부장적인 성담론을 바꾸는 기틀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고, 이제는 그것을 본격적인 행동으로 펼쳐나갈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제까지 공동체의 성문화는 여성을 끊임없이 타자화하고 자아를 잃고 하나의 상품으로 전략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지배적인 가부장적인 성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그 자신의 존재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올곧은 하나의 주체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재생산의 수단 이상의 어떠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하기에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여성 자신들의 자신에 대한 자학이었다. 더이상 가부장제 내에서의 우수한 상품-순결한 여성-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함에 의한 좌절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집이 되었다. 하지만 성폭력에 관한 논의

들이 대학 사회 내에서 피겨나감으로써 이러한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는 그 영향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기에 여성을 수단이 아닌 하나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성담론의 형성이 절실하다. 또한 자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은 끊임없이 상품화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성'이라는 것을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도색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성이라는 것을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무언가 은밀하고 소유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성'에 관한 지배욕과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은 대중하게 바람직한 관계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상대가 아닌 단지 여성이라는 성을 지배하고 구매하려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지배적인 가부장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성담론을 깨는 것은 여성들이 자기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주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은 여성운동의 하나의 커다란 기반임이 명백하다. 그러하기에 이를 통하여 이제까지 눈앞에 보이는 성담론에 의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미인대회 반대투쟁, 성폭력의 사안적 대응 등-에 주로 대응해 나가던 여성운동이 그 주요한 근본적인 논의지점을 형성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은 여성운동의 흐름에 주요한 의의를 가진다. 비록 현재는 여성연대회의가 성폭력의 발생이 가능하게 하는 성담론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미미한 상태이지만 이는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더욱 풍성하고 효과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여성운동의 대중적인 기반을 확산시킬 수 있다. 이제까지 여성운동은 세

으켰었다. 운동성있는 여성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그들만이 즐기는 것에서 그친다는 오해를 많이 들었었다. 물론 이제까지 여성운동은 그들 내부의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세워나가면서 실험적인 문화운동을 주로 해왔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에서 확대하여 여성주의적인 흐름을 가지고 대중적인 동의를 기반으로한 여성운동이 첫발을 내딛으려 한다. 그것의 출발선상에 놓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이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은 대중의 집단적인 움직임이라는 이룰 수 없다. 대중적인 기반없이 학칙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름 그대로의 학칙일 뿐이지 얻고자하는 목적을 전혀 이룰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공동체의 성문화를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있는 학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진정 대중들의 동의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학칙은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수와 교직원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투쟁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힘이 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학우 대중들의 동의와 힘이다. 이러한 동의가 있어야만 학칙은 모든 학내 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처벌이 주목적이 아닌 대학 공동체의 성문화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학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여성운동 내부에서는 여성적인 성담론을 통해 어떻게 학우대중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에 대하여 끊임없는 고민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학칙이 제정되었다면 그 적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고민을 통하여 여성운동은 그 내부로 닫혀있는 운동이 아닌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대중적 자치운동의 성격을 지닌다. 이제까지 각 대학의 총학생회에서는 학우들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왔다. 대학 사회에서 학생들은 대학 사회를 구성하는 3주체-학생,교직원,교수-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는 거의 무시되다시피 하였다. 학생들을 무시한 행정중심적인 제도들, 권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학생들을 무시한 건물 혹은 시설들의 운영, 학생들을 무시한 교수님들의 강의 운영 등 이제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지키고자 했던 권리들 즉 자치권은 하나같이 그들의 편의라는 이름하에 묵살되었었다. 이는 성폭력 문제에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학 사회에서 성폭력이 지니는 특수성, 즉 학습권의 측면 그리고 성폭력 학칙이 지니는 대학 공동체 내에서의 스스로의 의지로 제정하고 지켜나가는 자치규약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은 단순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운동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이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 운동은 크게 대중적인 자치운동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단순히 대학 당국이 제시해 주는 조그마한 이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적 자치운동의 흐름을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을 통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3.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의 그 동안의 성과

성폭력 자체에 대한 담론이 대학내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93년 서울대 신교수 사건부터였다. 그것은 성희롱이란 말로 칭해지며 대학 사회내에서 일어났다는 상징성 이외에도 성희롱 자체가 문제시 되었다는 측면에서 화제가 되었었다. 지금 우리는 그

것을 성폭력이라 칭하며 그러한 모든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앞서서 전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이 실질적으로 움직임을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제까지는 여성운동 내부에서 대중적인 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왔고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 해 말과 올해 초 부터였다. 얼마 전 교수들과 학교를 중심으로 학칙이 제정되었던 부산의 동아대는 학칙 내용 자체가 너무도 추상적으로 쓰여져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학교당국에서 주도적으로 제정한 것이었기에 학우들의 동의가 바탕이 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아대의 학칙은 학칙 자체로서의 의의만을 지니고 전혀 그 실용성은 지니지 못한채로 남아있다. 98년 9월 현재 성균관대와 서울시립대, 아주대에서 학칙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동아대라는 전례에서 보듯이 학내 3주체의 광범위한 동의에 기반하지 못하면 성폭력 학칙은 전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며 오히려 그 이후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부과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그러므로 학칙이 주목적-공동체 내의 바람직한 성담론 형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는 개강하자마자 학우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내는 것을 계획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 학칙은 아니지만 서울대에서는 각 단대별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학생회칙을 제정하여 학칙의 번거로운 처리를 조금 도맡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세대에서는 자치규약을 정하여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동의하에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성문화를 자체적으로 바꾸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성연대회의에 포함된 다른 많은 학교에서 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학교 자체적인 공청회

를 계획하고 있으며, 연대한 학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마당도 마련하여 함께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아직까지 학칙이 공식적으로 제정된 학교는 서울·경기 지역 내에서는 없지만 성폭력 학칙 제정이 대중적인 동의를 얻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무엇보다도 힘이 되는 것은 학우들의 관심이다.

4. outro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처벌규정을 통한 가해자의 처벌이 아니라 남성중심적이고 성기중심적인 성폭력 담론을 해체하고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체의 성문화 재구축이다. 그러므로 성폭력학칙을 제정하는 일뿐만 아니라 대학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 담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운동의 모습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운동이다. 그리고 담론의 변화는 우리 일상의 기본적인 권리찾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성폭력은 인간의 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침해이다.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은 너무나 일상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현 성폭력 담론이 기반으로 하는 봉건적인 잔재를 용인하면서 고개 숙이고 있을 뿐이다. 이제 더 이상 가장 기본적인 자신의 권리 침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일,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을 지금 여기서 시작하자.

대학 = 성폭력 박물관 : 없는 것이 없다?!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1. 교수에 의한 성폭력

94년 서울대 성희롱 사건

- 1·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비교와 2심의 문제점

1. 신체접촉 및 기타 언동을 통한 성희롱에 대하여

신교수의 성희롱 행위 하나 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가볍고 경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들은 몇 달에 걸쳐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반복되었음이 판결문 상에서도 나타나 있다. 근무하는 1년 동안 혹은 신교수를 다시 만나 성희롱을 당할까봐 불안에 떨던 원고의 아픔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재판부도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다소 잦지만 노골적인 성적 의도"라고 함으로써 재판부가 요구하는 노골적 의도는 아니지만 단순한 실수를 넘는 성적 행위에 대한 '의도' 혹은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시 "악성은 경미"하다고 하여 위법성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재판부는 위의 성적 접촉이 교육상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나 재판부가 제시한 수인 의무론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잦은" 행동이어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이며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행동까지 원고가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재판부는 모멸감, 굴욕감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지만 의도적인 성적 접촉, 입방식 제의, 몸매를 감상하는 눈길과 같은 2심이 인정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근무환경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위 전임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은 피고 신교수의 성희롱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한 증거이다. 재판부는 전임자 관련사항을 "진실이라 하더라도... 내적인 성적 영역의 비밀"에 속한다고 하여 판단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결코 내밀한 비밀이라기보다는 신교수 일방에 의한 성폭력이다. 가해자의 폭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로 사생활로 보호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폭력을 비밀의 영역

에 두어 보호할 때는 교묘하고 치밀한 가해자만이 보호받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또한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은 사건 판단에 관한 진실을 밝히 올바른 판단을 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는 별개의 문제로서 재판부가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지 판단 자체를 거부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2. 성희롱 거부 이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근무환경 저해 사실에 대하여

2심은 피고의 부당한 지시 및 간섭등으로 인해 원고의 치료치리 지연이 유발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치료 의뢰자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근무태만이 원인이라고 판시했다. 이하에서 2심 재판부 판결문에 나타난 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무태도와 관련하여(근무태도에 대해 주위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는 행위)
재판부가 원고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핵심 사실로 인정한 사항은 '원고의 치료치리 지연으로 인한 치료 의뢰 대학원생들의 불만(피고의 주장 사실은 1993년 23월경부터임)'이다.

피고나 재판부가 인정한 원고의 전임자 특히 근무 실적이 뛰어났다고 하는 조성애의 경우와 원고의 월평균 치료 처리량을 생각해보면 조성애의 경우는 14853개이고 원고의 경우는 1542개로서 오히려 4개 정도가 더 많다. 재판부의 방식대로 산술적인 계산에 의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지 즉, 산술적인 계산만으로는 원고의 치료치리 지연은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것이며 원고의 하루 치료처리량을 10개로 제한한 피고의 지시와 류권영을 비롯한 피고 실험실 학생들의 기기전용으로 인한 원고의 치료추정시간 감소라는 외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2) 근무환경 변경에 대해(근무환경을 외부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쾌하고 열악하게 만드는 것)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근무 초기에는 편의를 배려하여 원고의 근무지가 아닌 22동 309호 피고의 실험실에 제공되었던 원고의 책상사용을 금지하고 원래 근무위치인 23동 108호 NMR 기기실에 근무하도록 한 피고의 지시가 꼭 실험실 학생들과 원고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에게 위 NMR 기기의 사용에 있어서 위 피고 지도하에 있는 대학원생들도 배려하고 그들과 원만히 지낼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은 기기담당조교로서 피고 실험실 학생들보다 10배 이상 많은 학생들의 의뢰 치료를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 더군다나 당사가 치료치리 지연으로 치료의뢰 대학원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시기였음에도 이것은 원고의 치료치리 시간을 빼앗는 조치인 피고 실험실 학생들을 배려하라고 피고가 지시를 했다면 이것은 원고의 근무조건을 악화시키는 부당한 지시라 할 것이다.

그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원래 근무지가 아님에도 근무 초기에는 편의를 배려하여 22동 309호 피고의 실험실에 책상을 제공하여 약 7개월여간 동안이나 근무지로 하게 하였다가 갑자기 근무지를 옮기게 한 것이 그것도 한편으로는 피고 실험실 학생들의 기기 사용을 배려하고 원만히 지내라는 지시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 실험실의 책상사용 금지를 지시한 것이 원고와 피고 실험실 학생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가 아닌 것이다. 이것은 상호 모

순되는 지시로서 명백히 원고의 근무환경을 불쾌하게 그리고 열악하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3) 피고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2심은 원고가 공동 기기실의 업무가 자신의 업무와는 무관함을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전혀 협조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책망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신청휴의 NMR 기기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한 지시를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교수의 지시를 제자가 어길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오히려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피고의 부당행위에 속한다.

3. 원고의 재임용탈락(실질적 해고)에 대하여

1심판결에서는 피고 신청휴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판결한 반면, 2심에서는 화학과 NMR 유급조교들이 대부분 1년여의 임기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1) NMR 기기담당 조교는 1년의 임기로 종료되어 왔는가?

판결문은 원고가 분명히 유급조교이었음에도 "...원고는 대학원생 신분 조교가 아니라 학과의 업무와 학부과정의 전공 실험실습을 담당하는 전문 사무보조원이었다"라며 굳이 그 신분과 업무관계가 화학과와 다른 유급조교와는 구분짓고 있다. 또한 판결문은 "...원고는 화학과 유급조교의 형태로 취업하게 되었고..."라며 원고는 하나의 직장으로서 NMR 기기담당 조교로 취직한 것을 인정하며 또 다시 다른

유급조교와는 구분짓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재임용탈락이 관례이기 때문이라고 판시하는 근거로 다른 유급조교와 동일시하여 다른 화학과 유급조교의 근무기간을 예로 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다음을 살펴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첫째, 원고와 다른 화학과 유급조교들은 그 신분이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이거나 석사학위를 한 자가 유학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1년간 유급조교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겐 유급조교가 직장으로서 취업한 것이 아닌 것이다.

둘째, 화학과 유급조교들은 모두 본과 출신이지만 원고 및 여성 전임자들인 조성애와 안미정 모두 타학교 출신으로서 몇 년간의 직장으로서 NMR 기기담당 조교로서 취직한 것이다. 이것은 2심 재판부가 아예 사실 판단의 증거에서조차 제외한 '갑제10호증 피고의 자필 팩스'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위 팩스는 당시 피고가 독일 출장 중이었으며 원고의 전 전임자인 조성애가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당시 전주제지로) 사직을 하고 원고의 전임자인 안미정이 임용되는 경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1991. 5. 17자 피고의 자필 팩스에서는 "...마침 적당한 자리에 취직을 하게 되셨다니 우선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들은 시한적이었지만 그러나 몇 년간 같이 일하기를 바란 마음에 의하면 또한 유감스럽기 짝이 없군요."라고 하고 있다.

셋째, 원고의 전임자들 중 2심 피고측의 증인으로 나온 진의창은 1년간 근무를 하였는데도 'NMR 기기 담당 조교를 그만 둔 것은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사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 조교인 조성애는 재임용(연임)되어 약 1년 3개월 가까이 근무하다가 직장을 옮기기 위하여 스스로 사직하였고 원고의 전임자인 안미정의 경우는 피고의 성적 접촉을 거부한 이후 그 보복으로 피고가 재임용을

하지 않았다.(안미정의 진정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음) 그 어느 경우도 1년 임기로 자동면직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분명한 사실은 NMR 기기담당 조교의 경우는 다른 유급조교와는 구분되었고 1년의 임기만으로 자동면직된다는 관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넷째, 피고 및 피고측 증인들도 인정했던 사실로서 NMR 기기담당 조교는 그 숙련에 수개월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1년마다 그만두는 것보다 오래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2) 피고 신청휴의 조교의 (재)임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의 정도

재판부 판결문은 '조건적 성적 괴롭힘의 성부'라는 소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실질적 임용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실제로 원고를 면접하고 테스트를 했으며 출근증지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가 위 기기의 총책임자로서 그 기기를 조작관리할 업무담당자의 선택과 업무지시에 관한 사실 행위를 수행한 것일 뿐 피고에게 법적 임용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항으로서 피고가 실질적으로 NMR 기기담당 조교 (재)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졌으며 그것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였다는 것은 다음에서 명백하게 보여진다.

①재판부가 피고의 NMR 기기담당 조교의 임용에 관한 결정권을 입증해주는 증거인 갑제10호증(팩스 교신내용)을 아예 누락시켰다는 것은 재판부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갑제 10호증의 팩스 교신 내용은 당시 독일 출장 중이었던 피고 신청휴와 류권영 및 조성애 간에 주고받은 것으로서 원고의 전임자인 안미정의 임용 당시 NMR 기기담당 조교에 대한 피고 신청휴의 결정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팩스는 불과 4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원고의 전임자인 안미정의 임용결정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1991.

5. 21자 팩스는 피고 신청휴가 학과장에게 편지를 발송한 날로서 학과장이 조교에 대한 결정과정을 알기 전임에도 이미 피고 신청휴가 결정을 하고 그 발령절차까지 밟으라고 했다는 것은 피고 신청휴가 NMR 기기담당 조교의 채용에 대한 절대적 결정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②이미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판시하였듯이 원고는 피고의 추천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서 재임용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피고 신청휴가 원고를 조교를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국민대 교수 강간사건

1. 사건개요

국민대에서 교수에 의한 제자 강간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조사 중이며 조만간에 기소 여부 판정이 날 것이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작년 96년 12월 피해자 P 학우는 논문정리를 하고 있었다. 담당교수인 송교수가 그 학우에게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 함께 평창동에서 저녁을 먹었다. P 학우가 집에 가려고 하자 송교수는 자기가 데려다 준다면 집이 왕십리인데 의정부길로 해서 상계동길을 이용하자고 했다. 하지만 송교수는 파주로 차를 몰았으며 길을 잘못 들었다고 말하며 서울로 나가는 길목에서 여러 번 차를 돌리다가 어느 여관 앞에서 차를 세웠다. P 학우에게 할 얘기도 있으니 같이 들어가자고 했으며 P 학우는 거부했으니 교수는 '나를 존경하면 같이 가자'며 여관으로 유인했다. 여관에서 술을 시켜놓고 학업이야기를 하며 교수는 대

학원에 합격한 P 학우를 격려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송교수는 애인이 있느냐, 성관계는 해보지 않았느냐는 말을 하며 음란비디오를 틀고 거부하는 P 학우를 강간했다.

2. 강간사건고소와 의혹의 간통고소

다음날 P 학우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고민을 했다. 고소할 결심을 하지는 못했지만 사건 이후 송교수는 '너 요즘 왜 그러냐, 나 때문은 아닐 것이다.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뒤를 봐줄 것이고 10년 뒤면 아마 나에게 고맙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여자고 내가 남잔데 무슨 일이 있을지는 어떻게 알겠느냐'는 등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태도를 보이자 얼굴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기 때문에 공론화하기로 결심했다. 97년 2월 14일 고소를 하고 17일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 그리고 고소한 후 일주일만에 피해자는 간통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피해자는 이에 이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송교수의 10년 제자이며 같은 과 교직원인 이씨가 같은 과 대학원생이자 남편인 최씨와 P 학우를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한 것이다. 간통사건은 피해자를 평소 문란한 여성으로 여기게끔 하였고 강간사건을 회색시킴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근거없는 이 간통사건은 '송교수가 고소 이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점', '고소인이 전혀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한 달 후 취소된 점' 등 많은 의혹을 남긴 채 사라졌다.

3. 사건경과와 대책위 구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학생회에서는 2월 21일부터 공론화를 하였으며,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송교수 수업의 수강신청거부를 위한 선전활동을 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들었으

며 이후 사건해결을 위한 고민을 했다. 하지만 사건을 은폐하려는 학교측의 대자보 강제철거 등의 방해작업으로 인하여 학우들은 그 사건이 우리 학교의 사건인지도 모를 정도였다. 그러한 가운데 간통사건으로 인한 소문들은 속수무책으로 번져나갔다. 2월 26일 총여와 몇몇 학생대표들이 송교수와 면담을 했다. 송교수는 자신은 결백하며 현재 법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며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학기 수업은 폐강을 하였다. 이후 학생들의 휴직제만으로는 안 된다는 입장 하에 3월 11일 학생처장이 준비한 '성폭행 대자보 관련 당사자 모임'을 비공개 하에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교수는 피해자와 여관에 간 것까지 인정했으며, 피해자를 여성으로서가 아닌 다른 남학생과 똑같이 여겼기에 여관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씨는 고소를 하였으며 가정사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총여에서는 송교수가 간통 건에 대해 고소가 있기 전에 언급한 사실을 입수했기 때문에 송교수에게 이를 언급했으나 자신은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간통고소는 모르는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학교측은 더 이상의 진상조사를 펴지 않았으며 공개도 하지 않았고,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자며 '명확한 진상규명, 송교수의 퇴임, 수업폐강으로 인한 피해 과의 문제해결 등'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사건을 은폐, 왜곡시키고 학생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학교측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총여, 대학원 총학, 졸준위, 동연, 총학과 각 단대학생 회로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대책위는 진상규명과 송교수 퇴진을 위하여 4월 10일 정식으로 발족했으며 선전작업(대책위 신문, 대자보, 배서 등)과 침묵시위를 지속적으로 했다. 여론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송교수 퇴진과, 피해자의 명

예회복, 피해 과의 정상화, 학교측의 공개사과, 유언비어 유포관련자 처벌'을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천여명의 학우가 서명에 동참했다. 5월 8일 이러한 요구들로 학내에서 집회를 했으며 송교수의 방을 폐쇄했다. 송교수의 방 폐쇄가 가지는 의미는 많겠지만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에 쫓겨난 하나의 시작이며 우리는 성폭력의 가해자가 누구든지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함을 알리는 계기였다. 송교수는 4월 2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지금은 법적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후 대책위에서는 성폭력사건 발생시 학내에서 처벌할 수 있는 교칙제정(교수, 교직원, 학생 모두 해당되는)을 위해 계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며 학내의 문제로만이 아닌 사회 속에서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외부와 연대, 법적 투쟁까지 전개할 생각이다.

97년 4월 서울대 약대 구교수 성폭행 사건

1. 사건의 개요 -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의 경위

94년 4월 28일 실험을 위한 채집을 하기 위하여 교수님과 마산 근교의 시골로 가게 되었다. 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성에 대한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였으며 머리를 쥐어박고 허벅지, 옆구리 등을 꼬집고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마산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구교수는 동생 때에서 자게 될 거라는 출발할 때의 이야기와는 달리 호텔에서 묵자고 하였다. 그리고 교수님은 방을 한 개만 얻었고, 정선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으로 끌고 가서는 성추행을 시도하여 정선배는 결사적으로 항의하였다. 그리고 구교수는 정선배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가버렸다. 정선배는 이런 사건을 겪고는 다음날 바로 서울로 올라왔고 자신이 겪은 일들을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실험실에는 여학생 후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 이후에 어색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다 95년 10월 박사학위 논문 심사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했더니, 교수가 내려갈 때까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화를 내었고, 96년 4월 다시 말하였다가 몹시 혼이 났다.

96년 2학기가 되면서 교수님은 "이번 학기에 정00씨 졸업해"라고 이야기하고 정선배는 주변 사람들의 많은 축하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교수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너는 더 비참해져야 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절망해야 하고 3년 전에 학위를 줄 수 있었는데 미워서 안줬다. 미워서 조교자리도 다른 사람에게 줬고 장학금도 안 줬다. 직장이 생겨도 다 해방 놓을 거다. 너는 내게 정이 있느냐? 너가 내 종이 되지 않는 한 박사학위는 안 준다. 내가 너를 이번 학기에 졸업시키겠다고 해서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모양인데 큰 착각이다" 라고 하며 논문제출 심사를 거부하자, 정선배는 참담함 속에서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생각하기 위해 대구집으로 내려갔다. 그러던 중 교수님이 정선배가 실험노트를 가져간 것을 이유로 집에 전화를 하였고, 그로 인해 부모님들도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

일단 사제간의 관계회복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온 정선배는 97년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아홉차례에 걸쳐 교수와의 면담을 가졌으나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정선배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자신만의 문제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신과 피해를 받은 다른 지도학생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겪을 지도 모르는 후배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지금까지처럼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총장님에게 대학사회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정서를 3/11

일 제출하였다.

2. 진정서 제출 이후의 경과

약대학부 비대위는 진상조사를 진행하여 사실여부를 파악하였고, 비상총회를 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입장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냈다. 그리고 3학년의 경우 구교수가 맡고있는 실험을 '구교수의 공개사과와 사퇴, 본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구교수를 퇴진시키고, 정선배와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에 기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받고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아 성명서와 함께 총장에게 제출하였다.

약대 대학원에서는 각 실험실 대표자가 모여서 대책위를 구성하여 약대 교수들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구교수 공개사과와 퇴진'을 내용으로 하는 서명을 받아 성명서와 함께 총장에게 제출했다. 약대 교수님들은 교수의 징계에 대한 권한은 본부에 있고 약대에서는 학사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학사위원회에서 정선배와 다른 2인에 대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하였고, 행정적으로 논문제출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학위심사는 다른 대학원생들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약학과장과 제약과장 2인을 실무자로 하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여 진상 조사 작업을 하였다.

3. 구교수의 고소결과

구교수는 정선배의 아버님과 정선배를 비롯하여 진정서에 언급되었던 다른 3인의 지도학생들(총 5인)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그리고 정선배의 경우는 여기에 공영서류무효죄의 혐의를 더해 형사 고소하였다. 현재 서울지검의 유재만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아 조사하였으며 약대 교수님들의 진상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사결과,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임이 판명되었고, 구교수는 무고죄로 구속되었다.

4.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

4/15일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공대위가 구성되었다. 정선배, 약대학비대위, 총학생회, 대학원자치회, 관악여성모임연대가 그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 파생에 의한 성폭력

▶ 모 동아리에서 어떤 남학생이 모뎌지를 가서 여학생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차례로 성기와 가슴을 만지다가 한 여학생이 알아채고 소리를 질러 동아리에서 말고 있던 직책을 그만두고 한 학기 동안 휴학을 했다. 그 남학생이 복학을 해서 파 모뎌지를 가서는 새내기들의 가슴을 만지는 일을 또 저질러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상습적으로 그런 일을 저질러 왔다.

▶ 군에 입대하는 학우를 위한 술자리에서 군대가는 남자 선배가 집에 가려는 여자 후배의 손을 잡고 강제로 목에 키스를 할 주변에서 말린 후 한 여자 선배가 여자 후배에게 싫으면 싫다 라고 단호히 의견을 밝히라고 함. 이후 술자리에서 여자 선배가 그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함.

▶ 군에 입대하는 학우를 위한 환송식에서 매춘하러 가자는 분위기를 조장하며 가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여자 선배가 막아 문제화됨. 후배들과의 지속적

인 대화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

▶ 모 단대 학생들이 놀고 있을 때 타 단대 여학생이나 여학생 실무단이 들어가면 '여자다, 벗어봐' 등 호했다. 이것은 그 단대 여자 새내기의 증언이다.

▶ 단대별 행사 시간에 여성스러운(?) 남자 새내기들 앞에 불러 20분 동안 "너 남자 맞아? 벗어봐" 등 집단적 언어폭력을 가하는 일이 있었다. 과격하고 폭력적인 것만이 남성적인 것인가?

▶ 97년 5월 22일 강간미수 사건

- 피해자 진술

당시 상황 : 청년문화회(피해자 소속 동아리)에서 대동제 중 시화전을 진행하고 있었고 저녁 6시 30분 경 시화전을 철수하고 야외음악회를 보러 갔다가 선배들과 뒤쫓아들 등나무 옆 잔디밭에서 하던 중 학생회관 1층 화장실로 감. 사람들이 많아 학생회관 3층 여자 화장실로 올라감. 3층 화장실에는 두어 명의 여학생이 있었고 창 옆 안 쪽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막 일어서서 옷을 입고 바지 지퍼를 올리려던 순간 밖에서 문을 두드렸다. 누군가 급해서 혹은 노크소리를 듣지 못해서 두드리려나 생각하고 다시 노크를 막했을 때 과격하게 문이 열리면서 가해자인 남학생이 들어왔다. 어떤 상황인지 모른 채 본능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혹시 내가 남자화장실에 잘못 들어왔나 라는 당황함이 느껴져 "아니, 여기가 남자화장실이에요?" 라고 두어 번 물었는데 가해자가 내 손목을 붙들고 벽 쪽으로 몰아 부치며 "아니오 저 걱정이 돼서 왔어요"라고 몇 번 대답함.

그 때 마침 목격자가 들어와 벨트를 잠그고 밖으로 나갔고 "이 개자식아,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었

고 가해자는 또 정말 걱정이 돼서 왔다고 말을 하다가 추궁하자 세무학과 97학번 전창영이라고 대답했다. 그 때까지 최소한 걱정이 돼서 왔다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싶었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만나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나, 기억력 좋다. 나 너 기억해.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알겠나? 나, 너 기억한다!" 라고 말하고 목격자와 가해자가 말하는 사이 동아리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막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에서 가해자가 그림누리 쪽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감.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일단 동아리 뒷풀이 장소로 돌아왔고 조금 있다고 총학에서 한 선배가 찾는다는 전갈을 받고 총학으로 올라감. 총학에 가서 보니 가해자와 15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가해자가 거짓으로 이름을 댔음을 그 때 확인하였음.

- 목격자 진술

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본. 화장실 옆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는데 그림누리 쪽에서 가해자가 오더니 여자 화장실로 들어감. 이상하게 생각하여 따라 들어갔는데 가해자가 거칠게 노크를 몇 번 하더니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을 위에서 확인하더니 밀치고 들어감. 위급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쪽으로 쫓아갔고 여학우 비명소리가 들림. 가해자가 피해자를 밀치고 한 손을 꼭 잡고 고정시킨 후 포옹을 하고 있었음. 일단 가해자를 피해자와 데리고 왜 여자화장실을 들어갔느냐고 물으니, 걱정이 돼서 왔다고 대답함. 이름을 계속 추궁하자 세무학과 97학번 전창영이라고 대답함. 피해자가 돌아가려고 했고 가해자가 그림누리 쪽으로 도망을 감. 자봉다님 꽃아가 잡음. 총학생회로 데리고 왔을 때 형설수설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사람들이 학생증을 찾아 추궁하자 본명을 댔. 피해자를 불러 와 대면시킴.

가해자 진술

과 학우들과 대동계 뒤편이 중이었고 학생회관으로 왜 갔는지, 그러한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하겠다. 사이사이에 기억이 나는 것은 화장실 밖에서 피해자와 목격자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 총학생회로 가서 여러 사람들이 잘못을 추궁하였다는 것이다. 술이 많이 취해있는 상황이었기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 96년 여름, 농활을 갔다온 **과 94학번 여학우가 그 지역 청년에게 강간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다. 마침 이 여학우는 성폭력신고센터에서 지킴이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기에 침착하게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을 흐려놓은 채 이야기하길 꺼려했다. 강간을 당하지 않았으면 된 거 아니냐, 이름이 알려지면 네가 피해를 본다, 이 일이 알려지면 농활의 의의가 상하지 않겠느냐, 이 좁은 농촌에서 그 청년과 부모는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겠느냐 등...

▶ 신체적 특징을 이용하여 성폭언을 함. 여자후배의 입이 작은 것을 농담이라는 핑계로 "입이 작아 키스하면 재미없겠어" 등의 성폭언을 하여 불쾌감을 느낌.

▶ 여자후배가 회장이 되면 선배들의 "남자가 똑똑치 못하니까 여자애들이 하지" 라고 얘기하며 여자후배를 비하하는 발언을 함. 또한 동아리나 과학생회의 앞날을 우려하며 회장이 여자인 것이 불만인 듯한 발언을 함.

▶ 올해 공대에서 몇몇 여학우에게 음란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다. 전화를 걸어서 맨날 자기의 성경험을

이야기하며, 폰섹스를 벌여왔다고 한다. 자신의 이런 불쾌한 경험을 이야기하던 중 이것이 한 명에게만 걸려온 것이 아니고, 사건의 형태가 비슷하여 이들의 전화번호를 아는 이들을 추적하여 피의자를 색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주시하던 기색이 보이자 음란전화는 끊어졌다고 합니다.

▶ 다음은 이대 공대가 생겼을 때 통신망의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발췌한 것입니다.

• 제목 : 이대 공대...너네두 학교냐? 뽀하하하하하
올린 시각 : 97/08/28 16:15 읽음 : 575 관련자료 있음(TL)
고민했잖군.
너네들은 또 그러겠지?
가끔 술 먹을 때 "씨발, 내가 왜 이대공대에 왔지?" 하고 너 자신을 죽도록 미워하고 있을꺼다. 파하하하
너네 부모님들도 그러겠지...
'계집이라고 하나 있는데...부모 말을 좇아가고 미친년처럼 놀다가 저러다 잘 해서 시집이나 갈려나 모르겠다. 계집애가 공대라니...저년이 부모 앞선 다 시키는구나 호호호...' 하고 말아야.
존나 한심스럽다. 너네 솔직히 말해봐.
너 이대 공대 오기 존나 후회하지? 차라리 어디 숙대나 가서 남자나 꼬시고 살걸...하고 말아야 하지만 너흰 언제 왜냐?
바로 내년 이대공대기 때문이야.
하하하하하

• 제목 : 이대 공대? [필독]
올린 시각 : 97/08/30 00:20 읽음 : 494 관련자료 없음
어느 대학이나 황들이 많은 집단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가공할 황들의 집합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일생일대의 충격이었다.
어느 한 이대 공대년을 따먹었는데,
존나 별 것도 아닌 기술에 침 잠질출리고,
사까시 해주니까 존나 좋아하더라.
아아 내 기억엔 --과 인질루 기억하는데 난생 그렇게 맛 없는 여잔 처음이었다.
관계를 가지며 그런 생각을 했다.
어쩌면 그렇게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존나 기를 쓰는 걸까?
하이톤 존나 맛도 없었고
편히 정력남비만 한 것 같다.

• 제목 : 이대 공대...너네두 학교냐? 뽀하하하하하
올린 시각 : 97/08/28 16:15 읽음 : 575 관련자료 있음(TL)
존나 황들의 집합이라고 그건 모를꺼다. 어디가?
어디긴 너네 이대공대지. 병신들이 하하하
좋은말 할 때 얼굴 풀리리 물어 고치고, 살 쫓빠지게 해서 그리고 가끔 kplex같은 것도 있고,
또 아주 가끔은 노랜티도 돼니까, 너네 어디 지방대 영문과라고 속이고
한대 공대나 아니면, 고대 같은 애들한테 빌붙어봐.
그러면 내가 존나게 따먹다 버려줄테니까, 하하하
너네가 존나 씨발대지만, 한대 공대한테는 안 값다. 아가아...

• 제목 : 이대 공대? [필독]
올린 시각 : 97/08/30 00:20 읽음 : 494 관련자료 없음
한아디로 트릭으로 파온다 해도 다시는 따먹지 않을꺼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핵핵대고,
편히 흥분한 척 하고, "나 사랑해?" 하여 웃는 그 년의 물결이 바로 이대 공대의 진상인 것이다.
대가리엔 온통 남자 생각만 가득한 년들...
존나 나 씨발할 년들이다.
내일은 이대 의대생을 따먹고 굴을 올려야겠다.
(참고로 의대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 제목 : 이대 공대?
올린 시각 : 97/08/28 19:54 읽음 : 385 관련자료 없음
이대에도 공대가 있다.
그런 얌데 없는 것을...
편한 인력 남비다.

▶ 서울대 한 학우가 이대 모과에 보낸 미팅제안 엽서가 불러온 예기치 못한 사건이다. 엽서 그림은 이랬다. 수영복차림의 여성이 선정적 자세로 누워있고 왼쪽 위에 조그마하게 중년 남성의 전화하고 있는 그림이 있다. 대화내용은 남성이 "I'm Beautiful Girl! 우리 미팅하자" 라고 하며 여성은 "좋아요, 오빠!" 라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은 이대에서는 서울대 자체를 문제시하고, 서울대에서는 한 개인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어느 집단만의 문제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유발하고 묵인하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이다.

▶ 과 술자리에서 한 여학우가 동기들과 얘기를 하던 중 한 남학생이 그 여학생의 남자친구에게 '너 00의 젖 만졌다며?'라고 다 들으라고 얘기를 했다. 그후 그 여학생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대자보화 했으며 그 남학우는 결국 공개사과를 했다.

담배 피우는 것에 관하여

▶ 2호관 건물 1층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학우를 지나가던 복학생 남학생이 "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며 시비를 걸어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와 중 옆에 있던 피해자 친구의 가슴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부음. 학내에서 여론화가 되고 가해자는 단지 폭행한 부분만을 공개 사과하였음.

97년 성균관대 성폭력 사건

▶ 사건개요

3월 14일 새벽 잠을 자고 있는 한 여학우의 방에 한 남학우가 들어와 강간했다. 자취방에서 옆 방 친구로 인해 알게되어 옆 방에서 그 날 처음 만나 5명 정도가 함께 술 마시며 놀았고 자리가 끝난 후 가해자는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한 시간 후에 돌아왔다. 피해자는 그 당시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한창 새내기 환영회 기간이어서 굉장히 피곤한 몸으로 잠에 곪아 떨어져 있었다.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방에 가해자가 들어가 강간을 했고 피해자는 심신이 피로한 상태 그리고 너무 어두워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가해자가 웃을 추스리고 있을 때 피해자의 룸메이트가 들어왔고(새내기 환영회를 마친 5시경) 총여로 신고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

▶ 사건발생이후

- 사건의 진행상황

3월 14일 이후 성폭력대책위에서 첫 번째 대자보가 붙은 직후, 가해자의 반박대자보가 붙었고 그 이후 다시 대책위의 대자보가 붙었다. 반박대자보에서 가해자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와 대책위와 피해자는 4월 2일 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4월 10일 가해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해자에게 물어 제2차 요구안을 작성하여 요구하였으나 그것도 가해자가 거부, 주위의 여론과 학교측의 권유로 최종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합의서의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다.

1. 가해자는 강의실 SPEECH를 일주일에 10회씩, 5주간 각 단대별 과별로 강의시작과 동시에 5분간 실행한다.
2. 가해자 사과 중심의 공청회를 1회 실시한다. 가해자의 학생회관 출입은 이때만 허용된다.
3. 자필 설명 사과 대자보를 중대판과 종강에 1주일간 게시한다. 비대위에 참가했던 친구의 사과 대자보도 포함된다.
4.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에 두 달간 참여하고, 매주 상황을 중대판에 게시한다.
5. 가해자는 피해배상액을 지급한다.
6. 가해자는 다음 장소의 출입을 금한다.

- 1) 교내 - 식당, 학생회관(과방포함)
 - 2) 학교 앞의 상점(공식적인 일로 불가피한 경우에 사전에 허가를 받는다)
- *이 조항은 피해자가 학교를 졸업하는 2000년 2월까지 유효하다.
7. 다음 학기 수강 신청시 피해자와 같은 과목이 없도록 조정한다.

위 사항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된다.

다.

위 합의서를 가지고 학생과, 가해자, 총여측이 만나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하였으나 가해자가 1번 조항을 문제삼고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두 번의 자리를 더 가졌으나 가해자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대면하는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가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는 각각 강간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3. 전경에 의하여 :

한중련 사태 진압과정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인터뷰 녹취록에서

▶보호실에서 경찰들이 "니네 안에서 계속 재미봤다 메 애 몇 나오겠다." 옆에 있는 남학우랑 여학우랑 같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야, 니네 둘도 했냐?"라는 식으로 입에 담지 못할 말도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70여명 정도가 한 강의실에 잡혀 있었는데 전경들이 이렇게 악을 울리는 거예요 "야, 니네 동료 여학생들 어떤지 아냐" "니네 여학생들 가슴을 만져 보니까 니네들이 벌써 다 한거 아니냐, 가슴이 벌써 다 처졌더라. 어떤 애들은 가슴을 만져보니까 처녀같지가 않아."

▶종합관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단으로 끌려내려 오고 종합관 앞마당에 줄지어 앉아 있을때까지 성추행을 당했어요. 계단에는 전경들이 꼭 서 있었고, 한 줄로 맞춰가지고 고개 숙이고 앞사람 어깨에 손을 올리고 줄지어서 내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지나가는 애들 순서대로 가슴을 덤벼 잡아가고 뜯었어요. 영

당을 전문적으로 만지는 사람 따로 있었구요 급하게 지나가니까 손을 탁 집어 넣었어요 빨리 지나가라고 소리지르고 해서 지나갔구요. 전경들이 계속 이야기하는게 가슴이야기하고 몸메이야기하고 얼굴 좀 들어봐라 곤봉을 고개 들게 하고, 어디가나 그런 식이었거든요. "사수대 애들한테 맨날 몸대주지 않냐?" 그 전에 연대안에 갇혀 있을 때도 전경들이 우리 건물에 대고 "야, 이 씨발년들아, 니네 위안부 노릇하려고 왔냐" 이런 식으로 맨날 소리지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행되는 날에는 "둘 한번 던진 애들한테 한번씩 빨아줬냐" 이런 이야기하고 어떤 전경은 와가지고 옆에 있는 애한테 "배고프지 않냐, 나가면 밥 사주겠다" 애가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혼자 그 애를 때리면서 웃으면서 "내가 밥 사줄테니까 내 것도 빨아줄래?"라고 했어요.

▶"588이나 가라. 이런 년들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다 수출해 버려야 한다."

▶"니네가 뭐 김정일 기쁨조냐. 북한으로 보내라."

▶"니네 사수대하고, 남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밤에 뭐 했냐. 사수대한테 니네 몸대주고 살았지?"

▶"너희는 북한에 가서 김정일 기쁨조나 해라. 이 씨발년들아."

▶"고년들 털 참 많게 생겼다."

연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관한 관악여성도
임연대 대자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무협의 처리하면 없어지는 일인가?

연세대에서 연행된 학우들이 연행,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의하여 심한 성추행과 언어 성폭력을 당함.

피해 여학우 중 7인과, 한국여성단체 연합 등 7개

단체가 '공공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박일통 전 경찰청장과 현장 진압 책임자, 당시진압 경찰을 고소, 고발함. 수사를 4개월간 질질 끌어오다가, 증거가 불충분하며, 특정한 가해자를 가려낼 수 없고, 당시의 정황상 성추행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는 어처구니없는 근거로,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리함.

검찰의 무협의 불기소 처리에 대하여 고소인 7인 전원이 항고함. 현재는 항고장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임.

수많은 목격자와 진술이 있고, 성폭력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4개월씩이나 '수사'를 한 끝에 "당시의 정황상 성추행은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피해자는 수없이 많은데 가해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분명히 존재한 범죄사건을 간단히 묵살하고 은폐하였으므로 이는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여성 연행자에게는 아무렇게나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관행을 고착화시켰으므로 이는 또한 범죄인 것이다.

그들이 여성의 인권에 대하여 이처럼 쉽게 생각한다는 점과, 검찰이나 경찰이나 "운동권 여학생"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식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일곱 명의 고소인은 검찰의 무협의 처리에 항의하며 지난 4월 28일 전원이 이를 항고하였다. 사건이 일어난 지 열달 달이 지난 지금,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것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잊혀져서는 안된다.

첫째 날

문대 여학생 화장실 백지자보를 통해

수집된 성폭력 사례

다음은 지난 5월 말 '모반'에서 실시한 화장실 백지자보에 접수된 성폭력 사례들입니다.

익내에서

- *반바지 입구 과방에 앉아 있는데 뽀 선크 하나가 반바지 속을 계속 흘금거렸다
- *반바지를 못 입겠어
- *난 남자 친구가 하기 싫는데 자꾸 가슴 만지고 오렐하라 그런다. 싫은데도 이렇다면(분명히 싫다고 여러 번 말했다)사귀는 사이라도 성폭행?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의 요구는 분명 성폭력입니다
- 이런 남자랑은 사귀지 마
-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해주는 것과 싫은 걸 억지로 참고 해주는 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아니면, 당신이 상처입게 될 것입니다. 꼭 들으세요. 뼈저린 경험에서 하는 말입니다.
- *년 A컵이야 B컵이야 묻는 인간
- *"첫날밤"이라는 game에서 신음소리를 강요당했다.
- 뿐만 아니라 듣게 하는 것도 그렇다
- *말을 할 때 은근히 신체접촉을 많이 하는 인간들(선크.. 동기) 어깨 툭툭 치고, 찌르고, 정말 싫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결벽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
- *남자친구가 물 떠오라고 할 때
- *술자리에서 선크가 남들 몰래 손을 잡았다. 열라 징그럽게. 손을 확 뺐더니... 다시 잡더라 열라 징그럽게...
- *한 학기, 한 학기 지나고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느낀다. 내 몸이 완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우리 사회는 그걸 허락해주지 않는다.
- *MT가 짱이다. 개새끼들.
- *문대는 성폭력 천국이나? 이제 더 이상 담하고만 있지 않을꺼다. 4년제 다양한 인간들의 성추행에 시달리며..
- *과방에서 coffee심부름
- *모임에서 "여자가..""남자가.."

- *통신에서도 장난 아니예요. 말로 하는 것도 성폭력.
- *단체 장은 남, 부장은 여, 총무는 남으로 성별이 정해있음.
- *남자 화장실에는 나 누구람(몇학년, 모 양) 잤다고 자랑한다고 하던데. 누군지 속 시원히 밝혀요. 정말 개망신 시키게.
- *꼭 공개해 주세요. 어제 비디오방에서 너무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침연 비방을 따라간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화내고 말았는데 생각할수록 자존심 상하고, 나와 같은 여학우님들을 대표하고픈 생각이 듭니다. 은근슬쩍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얼굴에 입을 갖다대는 개만도 못한 그 선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친한 선후배사이에서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차라리 모르는 사이였으면 화라도 덜나죠. 끝으로 "장난이었어!"라는 말 한마디로 얼버무리는 그 선크. 망신 좀 당해봐야 해요. 참고로 그 놈은 여자친구도 있어요. 몇 년 사귀었다더라? 과연 내 잘못도 있었던 것인지...

- 제2, 제3의 피해자 막아야 돼요. 실명을 문대 전체에 공개해야 하고... 힘내세요 당신의 용기와 판단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

- *도서관(연대는 아니지만)에서 바로 옆자리 남학생의 (상습적인) 자위행위-정말 눈앞이...
- *성폭력의 근본원인은 남성들이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데 있다. 여성학을 남학생 교필로!!!

*모반의 사례 공개를 본 남자들 왈, "저거 뭐냐?" "여자들 화장실에 저판 거 붙어있대." "뭐하는지 한번 보러가고 싶다." "푸하하." 그 말이 더 무서웠다. 사례들 보다는.

익외에서

- *퇴근시간 지하철 역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중 멀쩡하게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바쁜 틈을 타서 뛰어와 내 가슴을 만지고 뛰어간다.
- 이런 얘기 하니 "불쌍한 놈 얼마나 여자가 없었으면..."하는 놈!
- *밤의 좌석버스가 무섭다. 옆에 남자가 앉는 게 싫다.
- 저는 창가 쪽에 절대 안 앉아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통로 쪽에 앉죠. 수동적인 게 싫지만
- *여성 여러분, 술자리에서 너무 취하지 마시다. 누가 데려다 주겠지 하는 마음은 우리 여학생을 더욱 약하게 만드니까요. 자신은 자신이 지켜 나갑시다.
- *지하철 술 먹은 걸 빙자로 여전히 옆에 여자 추근대는 남자도 있더라.
- *혼잡한 버스 안 뒤에 서 있던 아저씨가 엉덩이 더듬더라.
- *전철에서 지 물건을 갖다 문지르며 헉헉대는 양복 입은 아저씨. 내릴 역이라 내려버렸는데 확 팔라버리고 싶었다.
- *친구집에 가는 길에 어떤 남자가 뒤따라오며 혼잣말로 뭔가 지껄었다. 처음엔 신경쓰지 않았는데 나중에 무심코 듣고보니, '섹스하고 싶다.' '넣고 싶어 미치겠네.' 뭐 이런 말이었다. 그

순간 난... 얼굴이 노래질 수밖에 없었음.

*언젠가 아침에 만원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아저씨의 손이 다리 쪽으로 오는 것이다. 마침 문이 열려서(문 바로 앞이었다) 밖으로 확 밀고서는 내렸는데 하루 종일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밤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두 남자들이 갑자기 내게 달려들어 가슴을 막 주물고 뛰어갔다. 집에 오면서도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너무 수치스럽고 무방비 상태였던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좌석 버스타갈 땐 열자리의 남자를 조심하세요.

- 맞아요!!! 특히 가방으로 가까운 쪽 손 올려놓고 멀리 있는 팔을 밀로 은밀하게 넣어 서... 조심! 조심! 옆으로 바짝 붙는 남자 조심!

*어제 어느 술집에서 울 학교 교수라는 분들이 아르바이트 여학생 불러서 술 먹으라며 술집 여자 취급을 했다고 한다.

*어느 대형 서점에서 책을 보고있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옆눈으로 보니 자신의 00을 내놓고 나에게 보여주듯이 만지고 있었다.

*어느 남자선배가 술자리에서 남자 후배에게 주는 충고: "여자는 말야, 일단 술 먹어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치르고 보는 거야. 그럼 그 이후로는 말 안해도 알아서 잘 따라오거든." - 유니텔 익게에서 발췌

*고3때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내 뒤를 졸졸 쫓아왔다. 내가 확 뒤를 돌아보니 나보고 XX가 참 이쁘겠다. 섹스하고 싶어 죽겠다. 그러면서 계속 더러운 말만 지껄여댔다. 그래서 미친 변태새끼라고 한마디 던지고 막 도망갔다.

*지하철에서 정말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끼어서 가면서도 난 교재 읽기에 열중했다. 중간고사 때문에. 근데 내 아래에 느낌이 이상했다. 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라 생각했다. 뭐 가방같은 거... 내릴 때쯤 가방을 치우려고 하니 그건 가방이 아니라 어떤 아저씨의 손이었다. 그 때 느낌 정말 더러웠다. 물론 그날 시험 망했다. 그 후 난 절대 만원 지하철 타지 않는다.

*남녀의 성개념은 진짜 달라요. 여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 것.

- 진짜. 아는 선배한테 성추행 당할 위험도 있고 정말 강간당한 경험도 있어요.

*국민학교 땡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잘 모르는 아래 층 오빠가 끌어안은 적이 있었다. 그때 그게 성희롱인지도 몰랐다.

*버스 안에서 졸고 있었는데 뒷자리에 앉은 미친 남이 손을 앞으로 뻗어 만지고..

*손톱은 필수! 열심히 길러서 뽀족히 다듬으세요. 언젠가는 당신을 위험에서 구해줄 겁니다.

목표물은 짐승같은 남의 목.

*국민학교 때 수학여행가서 담임이 한방에서 같이 자는데 몸 더듬었다.

*밤 지하철 안 빈 자리 많은데 금실금실 내 옆으로 오다가 다시 금실금실 다른 여자 옆으로 또 다시 자리 옮겨 금실금실 옆으로 밀고..

*기차에서 내릴 때 사람없는 통로에서 한 영감탱이가 내 히프를 쑥 만지고는 징그럽게 웃었다.

이때 뭐라고 말을 해야할지 난감해서 그냥 재려보고 와버렸다. 대책?? 도대체 이럴 땐 뭐라고 해야하죠?

*고 2때 서를 남자 동기가 노래방에서 엉덩이를 끌어 안았다. 어색했지만 용기를 내어 손을 빼내고 "뭐야?"라고 소리질렀다. 그 후로 벽 모퉁이 같은데 서 있으면 양팔을 벽에 대고 가두면서 얼굴을 들이대는 등의 짓을 하며 쪼는 내 표정을 즐겼다. 가끔은 창밖을 보는 건데 왜 그러냐, 이상한 애다. 라는 식으로 무안을 주기도 하고, 난 애가 겁먹을 때를 알지. 하는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쪼 주기도... 매우 화가 났고 처음으로 성폭력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다. 무서운 세상! 정말이지 더러운 세상이다!

*이런 신체적 접촉 말고도 느끼한 눈빛 하나로도 충분히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독해 할

학외에서의 성폭력 대처방법

- 성폭력, 이렇게 대처하자!

성폭력 발생률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는 여성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예방책들이 있어야 한다.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술집에서 그리고 심지어 집안에서 여성의 몸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신술을 익혀야 한다. 여기에서 호신술이란 비단 무술 등을 연마하여 상대방에게 타격을 입히고 제압하여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신을 효율적으로 방어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상황을 예방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당황하여 가능한 조치마저 못 취하고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방법의 고안 등을 통칭하여 가리킨다.

성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남성성/여성성의 신화이다.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강요되어온 남성성/여성성의 각본에 따라 각각 여성은 '순종적이고 연약하고 부드럽고 감정적'이며, 남성은 '진취적이고 공격적이고 강인하고 이성적'이라고 간주된다. 이러한 성향은 여러 매체나 교육, 일상에서의 대화를 통해 부추겨지고, 보상받으며, 강화된다. 성폭력은 극단화, 변화화된 남성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호신술에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성폭력 상황에서 그러한 남성성 여성성 신화를 깨뜨려 가해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 즉, 당시의 가해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남성일 경우 대부분은 피해자 여성의 연약함 저항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가해하며 자신의 남성성이 그 일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을 때 희열을 느낀다고 한다. 이 때 여성들은 쉽게 그 '연약함 대 강인함의 게임'에 휩쓸리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받고 주입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실제보다 더욱 무기력하다고 인지하기 때문이다. 고로 호신술이란 물리적 기술의 측면과 더불어 빠른 판단력, 순종적인 여성상에서의 탈피할 수 있는 자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자리에서는 다른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고안된 위급 상황 모면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스스로의 행동 방향을 결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 자리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이 완벽한 대안일 수는 없고, 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겠지만 생각의 단초로 삼아 대처 방법들을 보완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1. 우선 명심해야 할 것!!

- 1) 위험한 상황에 대한 직감이 중요!
- 2) 대응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
->포기할 경우 중개 확보할 것/너무 약하게 보이지 말 것.
- 3) 대응서 : 주변에 누가 있는가?
어떤 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가?
얼마나 도망갈 수 있는가?
- 4) 표적이 되지말자

(예: 술에 취했다는 것을 기억자가 알지 못하도록 당당하게 똑바로 걷기)

- 5) 항상 거본을 준비하자.
- 6) 비명과 소리지르기를 구분할 것.

2. 장소별 성폭력 상황으로 생각해보는 대처법

▶ 엘리베이터 : 수위가 없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다!!!

how) 집에 전화 해서 데리러 오라고 한다.

"제가 먼저 타고 가도 될까요?"

같이 탔을 경우 : 스위치 앞에 서기

성폭력 발생시 각박은 중 눌러놓고 내려서 아무 집이나 벨 누르기, 혹은 소리 지르기

no) 절대 남자를 먼저 태우지 않는다.

비상벨은 높다.

▶ 집으로 들어가는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다!!!

: 그 발소리의 주인공이 기억할 의도가 없는 남자라면 억울하겠지만, 골목을 지나다가 속~하고 몸을 만지고 지나가는 xx를 만났던 여성이라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how) 그런 경우 그 사람을 자신의 뒤에 두는 것이 더 불안하고 위험하다. 최대의 좌우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줄여서 그 사람이 자신의 앞쪽으로 갈도록 유도한다.

심리전 : 한번씩 뒤돌아 쳐다보며 '당신의 명동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임지계 발소리도 우렁차게 걷기.

- 10m이내에 들어오면 나에게 오는 것인지 지나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기억할 의도로 쫓아오는 경우)

- 평소 애착이 있던 곳으로 된다. 바로 코앞이 아니라 대로를 향해 달 것.
- 등을 돌려 불려진 창문을 켜는 방법이 있다. 주인은 틀림없이 나올 것이고 그 때 도움을 청하도록 한다.
- 매일 지나는 길이라면 성폭력 발생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미리 어느 집에 늦게 까지 물을 내놓는지, 24시간 운영하는 가게는 편의점은 어디인지 눈여겨 봐두고 머리속에 기억해 두기.

민약 집었을 경우)

주로 남자의 성기를 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약하고 기격을 했을 경우 3분의 시간을 벌 수 있으며, 남자들의 자세 특성상 다리를 벌리고 있고, 때리기 좋은 위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위험하다면 그야말로 눈을 찌르거나, 얼음을 주먹에 끼고 목을 가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신도 경당할 수 없고, 빼앗기면 골장인 칼 등의 물건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골목을 걷다가 구석에서 물건을 내놓고 웃고 있는 노숙증 환자를 보았다!!!

how) 절대 비명지르거나 사색이 되어 뒤돌아 도망치지 말자. 그에게 지대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학내에서의 성폭력 대처 사례

1. 96년 이대 대동제에서의 고대 집단난동 사건

이화여대 제 2회 페미니즘 문화제 자료집에서

때는 96년 5월 29일, 하오 6시부터 고대생들이 이화광장 전체를 점거, 집단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다. 고 무장갑과 호루라기를 준비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이며 500여명의 고대생들이 용원가를 부리기 시작한다. 이내 이화광장은 난동을 부리는 학생들로 가득차다. 때는 이화대동제의 폐막제가 진행되는 중, 난동을 부리던 학생 한 명이 "운동장!"을 외치자, 순식간에 500여명의 학생들이 때를 지어 행사가 진행중인 운동장으로 진입한다. 그들은 기차놀이 대형으로 이화 지킴이들의 진입 저지선을 뚫고 운동장에 나란히 앉아 있던 이화인들의 대열로 무작정 돌진한다. 이들은 운동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뛰어가기로 3회 거듭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이화인들이 넘어져 찰과상을 입거나 명이 드는 부상을 입는다. 이들은 무대 위에 올라가 무대 하단부의 절반을 부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이화의 한 학우가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는다. 약학과 3학년 모 학우는 고대생에 의해 머리카락이 찢히고 가슴위쪽 부분을 폭행당한다. 학보사 기자는 고대생이 사다리를 밀치는 바람에 사다리에서 떨어진다. 수많은 이화인들이 육체적, 심리적 피해를 입는다. 이화대동제의 폐막제는 수시간 동안 저지된다.

고대로 대표되는 남학생들의 이화라는 공간에서의 대동제 방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가해자의 논리 1) 메이퀸 제도와 쌍쌍파티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화의 메이퀸 제도는 78년 24개의 과가 후보선발을 거부하여 폐지되었고, 쌍쌍파티는 82년도에 폐지되었다. 대동제가 외부인에게 개방된 시기는 85년부터이며, 바로 이 때부터 고대생을 비롯한 일련의 남학생들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화대동제의 집단난동이라는 12년 역사의 전통이 이대의 향락문화에 일침을 놓아 이대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논리를 당당하게 편다. 가해자의 궁색한 변명이다.

가해자의 논리 2) 대학가의 낭만? 이대생들이 원한다.

"우리는 이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대생들도 우리가 오기를 바란다. 우리가 와야 이화대동제가 뜨는 거 아니냐." 바로 작년 난동을 부린 한 남학생의 발언이다. 대학 새내기 시절, 동문 선배를 통해 한번쯤 접하기 쉬운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들은 마치 이화대동제의 집단난동이 대학가의 낭만문화의 산물인 양 부추긴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가해자 집단인 남성이 "여성은 강간당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막힌 논리를 펴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리이다. "낭만"과 "화해"라고 하는 달콤한 포장으로 여성집단을 구조적으로 억압하는 철저한 가해자의 논리인 것이다.

지금까지 이화라는 공간에서의 고대로 대표되는 남성집단의 난동은 이러한 가해자의 시각으로 "전통"으로 합리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작년 이화 여성위원회와 이화의 학우들은 12년에 걸친 고대생 이화대동제 집단난동사건을 명백히 '성폭력'으로 규정하였으며, 피해자로서의 이화의 입장을 표방했다.

왜 성폭력인가?

"성폭력이라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다름아닌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성기중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이다. 물리적 성기접촉이 없는 사건의 경우, 성폭력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하는 순결이데올로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즉, 순결만 잃지 않으면 별 일 아니라는 생각을 반영한다.

그러나 수잔브라운 밀러는 강간을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공포상태에 몰아 두는 의도적인 위협행위'라고 정의했다.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은 여성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여성의 의지를 거스른 채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외부적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물리적으로 행사되든 그렇지 않은 간에 여성들을 공포와 위협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이다.

매년 5월 이화대동제에서 벌어지는 고대생들의 집단난동은 그 주체가 남성이며 대상이 여성이고 난동이 벌어지는 공간이 여성들의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들이 이화대학에 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화가 바로 여성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상공간에서 성폭력의 위협을 느끼고 사는 반면, 남성은 여성의 공간에 들어와도 구타나 성폭력의 위협을 느끼는 일은 거의 없다. 그들은 신체적 물리력에 의해 얼마든지 여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전제된 하에 이화라는 공간에서 용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본질이다.

고대생들의 집단난동으로 자유로운 이화공동체라는 여성공간은 침해당하며, 이화라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은 육체적 피해 뿐 아니라 심리적 위압감과 불안감을 갖게 된다. 이 사건은 물리적, 사회·정치적 권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성집단에 의해서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에게 가해진 의도성 짙은 위협 행위이며 폭력 행위인 것이다. 이는 명백히 집단적 성폭력이다.

이화라는 공간이 갖는 의미

"이대생은 우리 것, 숙대생도 양보 못한다."라는 막걸리 찬가를 부르는 그들 남성권력집단에 의해 침탈당하는 이화라는 공간. 이 공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얼마전 S대 여학생 화장실에서는 강간미수 사건이 있었고, P대에선 교수의 학생 성추행 사건이 있었으며, D대에선 바로 몇일 전 강간사건이 있었고, 신입생오리엔테이션 기간에는 수많은 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모 대학들에선 여성문제를 다룬 자보들이 뜯겨지는 등의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학의 진보성은 '여성'이라는 이 사회 비주류집단은 배제한 채 이야기되고 있는

듯 하다. 사회에서 주장하는 평등의 가치는 단지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이 사회 어느 곳에서도 '여성'의 공간은 존재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남성권력사회에서 이화라는 공간은 유일한 '여성'들의 공간이며, 기존 사회와 대학의 '남성권력문화'에 대응하여 '여성문화'로 대표되는 대항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화는 어떻게 노력해왔는가.

96년 이화 여성위원회와 이화인들은 우리가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여론화시켜나갔으며, 고대에서 규탄집회와 항의집회를 여는 등의 활동을 폈었다. 그러나 고대측에서는 고대학우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학칙 상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저 주동학생 몇몇을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하거나, 방학 중 정학이라는 유명무실한 징계방식으로 처리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거나 해결을 하는 데에 역부족이었다.

97년, 이화 여성위원회와 이화 총학생회는 지금까지 고대총학생회와 고대 여학생위원회와의 고대난동 대책모임을 가졌다. 고대측에서도 이 사건을 명백한 성폭력으로 규정하였으며, 앞으로 양교간의 대책모임의 전개와 더불어 학교 당국간의 만남을 통해 다시는 이화라는 '여성'공간에서 고대로 대표되는 '남성' 집단의 성폭력이 자행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만일 재발시에 학칙상, 그리고 형사상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 및 명예훼손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받을 것이다.

2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성폭력 사건

서울대 반성폭력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집에서 발췌

『사회/주제별 소모임-여성소모임 [들뜬] (go CW)』 974번

제 목: 고대 총의 성폭력

올린이: 고대여위(양진) 98/10/12 02:56 읽음:135 관련자료 없음

○사건경위

본 성폭력 사건은 6월 13일 투쟁본부 활동, 학부제 투쟁 등 기간의 투쟁들을 총화하는 자리로서의 술자리에서 발생하였다. 이날 진행된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총학생회장은 함께 자리한 여학우들에게 귀와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의 원치않는 신체적 접촉을 가했다. 이에 피해 여학우들은 당황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였고, 가해자는 이것에 문제제기하는 다른 여학우에게 두차례 뺨을 맞았으나 계속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 총학생회와 피해자측이 대책을 논의하였고 이후 여학생위원회가 포함된 대책위가 새로이 구성되어 지금까지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사회/주제별 소모임-여성소모임 [들뜬] (go CW)』 975번

제 목: 총학생회장사과문

올린이: 고대여위(양진) 98/10/12 02:57 읽음:122 관련자료 없음

사과문

이 글은 6월 13일에 있었던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을 평가하고, 이후의 처벌을 정확히 하기 위한 평가서의 성격을 겸하는 사과문입니다. 이 글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서술되어지기를 요구받는 바, 사건의 개요와 성격규정, 처벌은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와 저의 솔직한 사죄와 반성이 들어가야 할 부분은 마지막 평가에서 더욱 세밀하게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동지들에게 진정된 사죄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작성합니다. 사건의 개요와 진행이 일은 6월 8일부터 12일까지의 교육투쟁 2차 총력투쟁기간에 단식과 백일의 선전전, 그리고 총투표와 12일 비상학생총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활동하던 제가, 기간 함께 활동하던 동지들에게 감사함을 느껴, 13일 오후에 약속을 잡고,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잘못과 과음으로 인하여 함께 자리했던 여학우들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불쾌함과 모멸감을 느낀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처벌과 조치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요구를 받고서야 저는 당시를 기억하지 못했던 일들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고, 사죄하기 위한 반성문과 만남의 시간을 뒤늦게 가졌습니다. 피해자대변인 형과의 계속적인 만남과 처벌, 조치를 하기 위해 원칙과 성격규정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사건의 성격규정

이 일의 성격은, 첫번째로 남성중심적인 문화와 인식에서 비롯된,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강요하여 심적, 정신적 피해를 가한 성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드러나, 인식의 차이로 말로 합리화 되어지기도 하지만, 명백히 이번 일은 의도여부를 떠나 원치않는 신체접촉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 피해학우 한사람 한사람에게 불쾌감과 모멸감, 불신감을 만들어낸 면에서 성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함께 활동하는 활동가들에게, 개인적인 자질부족과 인식부족, 자기통제 부족으로 발생하여 다른 활동가들에게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나 활동의 면에 있어 피해를 입히고, 서로의 공동활동에 불신을 안겨 준, 반활동가적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후의 활동에 있어서도 상호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행위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이번 일이 저의 활동 속에서 평가되지 못하고, 피해학우들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들어온 이후에야 공식적이고 본격적인 평가와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집 내에서 문제제기와 비판이 있었으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사죄, 면담, 징계 등 문제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반성하고 근신하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사과를 하겠다고 생각한 것 이외의 행동을 생각지 못한 것, 진정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지들이 주신 큰 기회를 더욱 성실하게 활동하는 것을

통해 보답하겠습니다. 저의 과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단식을 하고도 제대로 자신의 몸을 간수하지 못하고 음주를 한 것이나, 그 자리의 성격이 너무나도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부족함으로 과음을 하여 만취의 상태가 되었던 것이나, 인간으로도, 활동가로도 어느 면에서도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을 소중하고 열심히 하는 동지들에게 저질러버린 그릇된 행동들 모두가 잘못된 것이고,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죄를 너그러운 동지들로 처리해 주시는 동지들께 진정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사죄한 마음으로-그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으며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지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가의 마지막을 대신할까 합니다.

6월 24일 밤 11시경

김지욱 드림

『사회/주제별 소모임-여성소모임 [들뜰] (go CW)』 976번

제 목: 3단위의 입장

올린이: 고대여위(양진) 98/10/12 03:02 읽음: 105 관련자료 없음

총학생회장의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31대 총학생회, 6대 여학생위원회의 입장

1. 사건의 성격

사건해결을 위해 구성된 31대 총학생회와 6대 여학생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성별 위계적인 권력구조로서의 가부장제"에 기반하여,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물상(物象)화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성폭력 사건입니다. 현재 성폭력 발생률 세계 2위라는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대학사회 역시 성폭력 사건에 있어 예외적인 공간일 수 없습니다. 고대 역시 과도관 화장실 사건에서부터 이대대동계에서의 고대생의 집단적 성폭력 사건까지 다양한 유형의 크고 작은 학내 성폭력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고, 안임에서 성폭력을 말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현 사회의 어느 집단이나 개인도 성폭력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대학 내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우들의 의지를 모아냄으로서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논의의 과정들.

● 피해자 중심의 관점과 가해자의 인권에 관하여

성폭력에 대한 개념적 공유가 미흡하고, 성폭력 사건이 개인적 영역의 문제로 인식되는 우리 사회에서 사건의 해결과정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성폭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왜곡되어 왔습니다. 또한 성폭력 문제의 사회성을 방기한 채 가해자의 도덕성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성폭력 사건본질을 흐려온 것이 사실입

니다.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도 사건을 성폭력이 아닌, 학생운동전반의 도덕성의 문제로 접근하여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 지금까지 총학-여학생위원회-피해자측이 참여한 사건 해결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피해경험과 사건 해결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가해자 징계에 관하여

현재까지의 학내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학내 대자보를 통한 대학 구성원에 대한 사과문, 학칙상의 처벌(이대대동계 고대생난동 사건), 성폭력상담소 자원봉사 등의 사회적 해결과정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사건도 그간의 다른 성폭력사건 해결과 같은 맥락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더하여 사회적 징계의 과정에 있어 이번 사건이 고려되어야 할 지점은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과, 직위상 2만 학우를 대표하는 직선간부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우들이 부여한 권력이 성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었기에 학우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반납하고 학우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사죄하는 것은 마땅히 총학생회장으로서의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이를 위해 학우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사건의 올바른 책임지는 태도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여학생위원회로 접수된 성폭력 사건이 20여건을 넘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성폭력의 예외일 수는 없으며 끊임없이 성폭력을 재생산하고 있는 성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가부장적 구조를 변혁하지 않는 한 결코 대학사회 내에서 성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이번 사건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은 성폭력문제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제고이며 이를 위해 성폭력을 재생산하는 학내 가부장적 구조의 변혁을 위한 보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31대 총학생회와 6대 여학생위원회에서는 성폭력근절을 위한 학칙과 자치규약 제정운동, 성인식의 제고를 위한 움직임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1) 성폭력근절을 위한 학칙제정과 성폭력 자치규약

학우들의 학습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유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칙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이를 실효화해내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학생자치공간 내부의 자치규약으로서 '성폭력 자치규약'을 제안합니다. 이는 이미 관악을 비롯한 몇몇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학우들의 자발적 의지로 시행되는 것인만큼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학내 성인식제고를 위한 공청회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내 성폭력에 대한 학우들의 성인식 지반을 공고히 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학우들과 함께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기 위해 10월중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자치규약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제별 소모임-여성소모임 [들뜰] (go CW)』 977번

제 목: 피해자의 입장

올린이: 고대여위(양진) 98/10/12 03:02 읽음: 106 관련자료 없음

●피해자 입장

당시 제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또는 그 행위가 어떤 의도인지 파악이 안되어 상당히 당황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후 상황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명백히 남성, 총학생회장이라는 우월한 지위와 학번을 매개로 한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학내에서의 학우들을 대표하는 지위, 역할을 생각해 볼 때나, 이와 비슷한 성폭력 사례가 지나친 관용으로 묻혀져 가는 것을 볼 때, 사안이 공개되고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나치게 이 사건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간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가해자 개인의 한 번의 실수로 여겨지거나 또는 그 반대로 운동권 전체의 문제로 재해석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건의 공개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가해자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매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문제제기 하고 싶은 것은 한 개인의 인간성을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보적이라 여겨지는 대학 문화 전체에 퍼져있는 취종의 성폭력은 온건해질 실수로 치부되는 지금까지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회와 학생운동을 책임지는 활동가의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실천이 시작된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학생운동이 아무리 관성화 되었다해도 대학사회에서 약자의 입장을 세우며 발언해왔던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단순히 피해자가 아닌 대학문화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반성하는 계기로 이 사건을 바라보겠습니다.

-피해학우가

『사회/주제별 소모임-여성소모임 [들꽃] (go CW), 978번

제 목: 총학생회의 사과문

올린이: 고대여위(양진) 98/10/12 03:03 읽음: 101 관련자료 없음

31대 민족고대 총학생회 사과문

31대 민족고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김지옥 형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학생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욕에 갇히게 된 한 동지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무척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에 대해 대중적으로 평가받고,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기에 사안을 공개하고, 이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결의를 하는 바입니다.

1. 이번 사안에 대하여

가해자인 현 총학생회장은 6월에 이 사건이 있는 이후, 수차례 사과문을 쓰며 반성과 근신의 기간을 가졌으며, 금주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옥중에서 운동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고 투쟁하며,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 총학생회장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논의를 총학생회, 여학생위원회, 피해자대변인이 구성된 '3단체 회의'에 위임하였으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는 그것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총학생회장을 오히려 보좌하지 못하여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총학생회는 책임을 느낍니다. 총학생회장을 중심으로 하여 98년 한 해동안 열심히 활동할 것을 결의하였던 총학생회가 이 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장의 성폭력과 총학생회장이 임기 동안 충실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보좌하지 못한 점에 대해, 31대 민족고대 총학생회는 지금까지 총학생회와 함께 했던 민족고대 2만 학우들과 각급 대중운동 단위의 활동가 동지들에게 거듭 사과하는 바입니다.

2. 기간의 논의에 대해서

기간의 논의 과정 속에서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 사건해결의 방식에 대해서 책임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대중운동 단위 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도 진행을 하며 사건을보다 충실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총, 부총학생회장이 학교에 있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기에 논의에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사회와 학생운동 진영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성폭력의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재의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성과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3.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결의하며

사안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현 총학생회장이 사퇴를 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폭력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왜곡된 성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31대 민족고대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 사퇴의 아픔을 잊지 않으며, 현 사회에서 성폭력이 근절되고 누구도 성적 대상화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와 함께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펼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안이 학생운동 전반의 도덕성에 대한 공격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사회로부터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사회/주제별 소모임-여성소모임 [들꽃] (go CW), 979번

제 목: 고대여위 입장

올린이: 고대여위(양진) 98/10/12 03:07 읽음: 109 관련자료 없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학생위원회의 입장

지난 9월 29일 공개된 총학생회장 성폭력 사건을 접하며 많은 학우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여학생위원회의 입장을 다시금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생일은 6월 13일이었으나 여학생위원회가 사건을 접수받은 것은 8월 초였습니다. 여학생위원회는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사건을 접수받고 피해자측과 총학생회와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대책위에서 가장 올바른 성폭력 사건의 해결방안이 무엇일지에 관한 고민들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여러 입장들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총학생회장이 구속되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고연전과 같은 상황으로 논의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짧게는 한달, 평균적으로 2-3달이 소요되었던 그간의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정에 소요된 기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사건이 특별 취급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간 학내 성폭력이 발생했을 시 이를 처리하는데 있어 여학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시켜 왔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칙을 적용시켰습니다.

1. 피해자 보호의 원칙

피해자 보호의 원칙은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정에 있어 피해자에게 가해지기 쉬운 제2의 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해결에 있어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성폭력의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도록 피해자의 여성학적 인식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서도 사건의 해결과정에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2. 가해자 처벌의 원칙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있어 가해자 처벌은 마땅히 사건의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이후 이와 같은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해자의 여성학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총학생회장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하여 성폭력을 가했기 때문에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해결하지 않고 총학생회장으로서의 징계를 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해자는 학우들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는 총학생회장으로서의 가해자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성폭력 사건을 가해자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로만 바라보거나 정치적으로 바라보면서 성폭력사건으로서의 본질을 흐리는 태도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3.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 노력

이같은 성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여성 억압적이고 성차별적인 가부장제가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그 시작은 힘들더라도 이러한 가부장적인 구조를 변혁하는 것만이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의 축소판인 대학사회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려면,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여성학적 인식을 제고(提高)하는 것과 학칙/자치규약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 근간을 이룰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을 명확히 해결하고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는 10월 25일에는 성폭력근절을 위한 학칙/자치규약 공청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학내의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학우들의 의지를 모아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가는 이야기

A: 스미스씨, 길을 가는데 강도가 칼을 들어대며 위협했다고 주장이었죠?

스미스: 네.

A: 칼을 직접 보았습니까?

스미스: 아니요.

A: 강도와 싸우고 저항하셨습니까?

스미스: 아니요.

A: 왜 안했죠?

스미스: 그 사람은 칼을 들어대고 있었습니

A: 그래서 저항하기 보다는 그 사람의 요구대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거군요.

스미스: 네.

A: 소리를 질렀습니까?

스미스: 아니요.

A: 다른 말로 하자면 당신은 도움을 얻기 위해 아무 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스미스: 저는 두려웠습니다.

A: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스미스: 아니요.

A: 어전에 그냥 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스미스: 네, 물론이요.

A: 음... 그건 당신이 기꺼이 준건가요? 그건 그렇고 강도를 만나기 전 그날 당신은 어디서 저녁을 보냈죠?

스미스: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A: 술을 마신 상태라고요? 그레 술값을 어떻게 지불했죠?

스미스: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A: 지갑 안에는 얼마나 있었죠?

스미스: 50만원 정도.

A: 꽤 많은 돈이군요. 술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지갑에 있던 그 돈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스미스: 글썽요, 아마 한 두시간 동안 지갑을 밖에 놓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거죠?

A: 당신은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그냥 준 적이

있었죠. 사실 그 자선행위로 인해 당신은 명망을 얻었죠. 당신은 당신이 술값을 지불했다고 했죠. 당신이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짜고 연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스미스: 들어보세요, 네가 원했다면.....

A: 그건 그렇고 노상 강도에겐 접어있던 게 몇시죠?

스미스: 밤 11시 쯤이요.

A: 밤 11시에 길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스미스: 그냥 걷고 있었습니

A: 그냥 걷고 있었다구요? 너무 뛰어서 운전할 수 없었군요. 밤늦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을 테지요.

A: 당신은 노상 강도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스미스: 노상강도를 당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A: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스미스: 음..... 청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A: 굵비싼 옷 말이죠?

스미스: 그래요, 당신도 알고 있

겠지만 난 성공한 변호사입니다.

A: 다른 말로 하자면 당신은 밤늦게 길거리를 걸어 가는 중이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거죠. 게다가 나는 돈이 많으니 내 돈을 빼앗아가도 좋다고 생각하기 쉽도록 비싼 옷을 입고 있었군요. 그렇지 않나요?

A: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더 잘 알지 못한다면 당신이 노상강도 당한 이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유발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스미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카시오네 1호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타학교의 반성폭력 운동 -자치규약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고대 법대 자치규약 제정운동

1. 제기배경

고대 법대의 경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치규약 제정운동이 15대 법대 여학생회의 중심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이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자치규약 제정운동에 대해 법대 학생회도 호의적(이어서 자치규약 제정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을 타고 '법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치규약 제정을 위한 3자 테이블'이 구성되어, 한달여의 논의 과정을 거쳐 올해 5월 26일 자치규약 가안 검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2. 자치규약 제정운동의 목적 및 대상

법대 내 자치규약의 목적은 법대 내 학부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법대 내에서의 양성평등적인 문화를 건설하여 법대 내 학부생들의 성평등적 교육환경권까지 담보해 낼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애초에 자치규약의 상을 '자치규약 형성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간의 자발적인 동의로 이루어진 약속'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자치규약의 적용대상을 법대 내 학부생들에 한정시켰다. 따라서 자치규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성폭력 사건의 양 당사자가 법대 학부생일 경우에 한하며, 일방만이 법대 학부생일 경우에는 학칙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합의하였다.

3. 자치규약 제정운동의 진행과정

올해 7월 4일, 15대 법대 여학생회는 자치규약 제정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자치규약 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5대 법대 여학생회가 '법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치규약 제정을 위한 3자 테이블' 구성을 제안하여 5월부터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약 한 달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15대 법대 여학생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된 가안의 초안을 바탕으로 하여 논의가 진행되었고, 5월 26일 자치규약 가안 검토 공청회가 법대 내 모든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었다. 앞으로도 2학기 중에 2-3차례 이와 같은 공청회를 더 개최하여, 올해 내에 자치규약 가안을 인준받을

1) 자치규약 제정은 32대 법대 학생회의 여성관련 공약 가운데의 하나이다.

2) 3자 테이블 구성 단위는 다음과 같다.

: 32대 법대 학생회, 15대 법대 여학생회, 법대 여성학 학회 '하늘의 절반'

예정으로 활동하고 있다.

4. 강제력이 있는 자치규약의 상을 사고하게 된 까닭

자치규약을 선언문 형식으로 제정하여야 할 것인가 혹은 강제력에 관한 규정을 두어 단대 학생회칙과 유사한 형식을 제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후자의 입장을 채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치규약의 실효성 측면에서 강제력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선언문 형식은 제정 당시에 일시적으로 성담론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강제력을 두면 학내 성폭력에 대한 학부생 전원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하효과가 생겨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서울대 사회대 특별 학생회칙

1. 제기배경

관악여성모임연대는 지난 93년 신교수(일명 우조교 사건의 가해자) 퇴진운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반성폭력 운동을 해오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성폭력 학칙제정'을 서울대 대학본부에 요구하고 있다. 대학본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그 제정일 늦어지고 있던 중, 98년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자치적 성격과 학생사회내 반성폭력 운동의 의지를 담아내기 위하여 단대 별 자치규약으로서의 학생회칙 제정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2. 학생회칙의 성격, 목적 및 대상

학생회칙은 그 명칭대로 학생회의 권한으로 학생사회가 스스로 정하는 자치규약이다. 따라서 학생회칙은 지켜야 할 도덕적인 의미가 있을 뿐, 강제력은 없다. 그러므로 제정 그 자체보다는 성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공론화시키고, 자치규약에 대한 학생사회 내부의 동의를 얼마나 얻어낼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학생회칙의 제정은 단대 학생대표자 회의를 통하여 제안하고 학생대표자들의 동의에 따라 제정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방식을 취할 경우 대다수의 일반 학우들이 학생회칙의 상세한 내용을 모를 수 있을 뿐 더러 제정 자체를 알지 못할 우려가 높으며, 대표자를 통한 결정이 얼마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를 구현할 수 있는나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그다지 좋은 방식은 아닐 것이다.

당초 학생회칙 제정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 학생들의 성폭력 학칙제정 요구가 단지 소수의 여성운동가들만의 요구라고 생각하는 대학 본부에 그것이 학생사회의 전반적인 요구임을 알려내어 하나의 압력장치로 이용하고자 함이었고, 나아가 학생회칙 제정이라는 자치운동을 통해 학생은 단순히 대학 본부의 통제 대상이 아닌, 학내의 일 주체로서 존재함을 보여주기를 위한 것이었다. 둘째, 학생회칙 제정운동을 벌여내는 과정에서 성폭력 문제에 관한 학생사회 내부의 보다 깊이있는 문제의식 고취를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분명한 대중운동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학칙제정운동이 입법운동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보완하고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학생회칙의 제정은 위의 두 가지 목적을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두 번째의 목적은 활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의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회칙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학생에만 국한되는데, 그것도 학생 자신이 그 학생회칙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무용지물이다. 피해 학생의 경우도 학생회칙을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의지가 있어야 하며, 가해 학생 또한 학생회칙이 정한 처벌·주로 공개사과의 형식·에 따를 의사가 없다면 지키지 않으면 그 뿐, 어떤 것도 강제할 수는 없다. 이것은 학생회칙의 의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뚜렷한 한계지점이 되기도 한다. 피해자가 학생회칙이 제정되어 있는 단대의 학생이 아닐 경우는 물론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그 단대의 학생일지라도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대학원생이나 교수, 기타 교직원 등·및 다른 단대의 학생인 경우 또한 해당되지 않는다.

3. 학생회칙의 제정 과정

서울대 사회대의 경우 1998년 4월, 사회대 학생들의 총투표를 통해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회대 학생회칙'을 제정했으며, 그 외 인문대의 경우 같은 해 단대 학생대표자 회의를 통해 제정하였고, 자연대는 같은 해 가을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여 제정되지 못했으며, 올해 5월 공대에서 이들 간의 연장투표 끝에 총투표를 통한 학생회칙을 제정하였다.

사회대 학생회칙의 제정 과정만 살펴보면, 제 16대 사회대 학생회는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회대 학생회칙'을 제정하기로 했으나, 실제의 활동은 주로 사회대 내의 여성운동 자치단체인 사회대 여학생 자치회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사회대는 4월 초 학생회칙 제정을 위한 실천단 30여명을 조직했으며, 학생회칙에 대한 공청회와 소규모의 토론회, 교양을 위한 시간들을 가졌다. 그 외 학생회 선거와 비슷한 형식으로 자보와 선전물 등이 나갔으며, 막판 선전전과 강의실 홍보에는 과 학생회장들이 같이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투표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고, 52% 정도의 투표율과 약 98%이상의 찬성으로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회대 학생회칙'은 제정되었다.

연세대 사회대 자치규약

1. 제기배경

그 동안 연대의 총여학생회나 여성운동 단위들이 공개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맡아서 처리한 경험은 거의 없다. (유일하게 97년 신학과 김근진 교수의 언어폭력이 있었다.) 이것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것은 여성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과격한 여성운동, 혹은 성폭력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여성운동 등으로 인해 학내 성폭력 사건이 여성운동 단위로 접수되지 않는 상황이다. 학내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성폭력 사건이 자신의 주변에서 혹은 자신에게 발생해도 이를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매우 낮고 이것은 다시 여성운동 단위들이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지 못하는 경향이 된다. 또한 연대 여학생처 내에 성폭력 상담소가 존재하면서 실제적인 상담은 성폭력 상담소로 요구되는데, 불과 몇 달 전부터 상담에 대해 교육받은 전문인이 상담을 시작했고, 학교 내 기구이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면서 학교 명예를 위해 성폭력 상담소로 접수된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 상담소에서 은폐하는 등 오히려 성폭력 상담소의 존재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결국 성폭력이 무엇이고, 성폭력을 당했을 때의 행동 등 이론적인 무언가는 알면서도 자신의 일상에서는 그러한 지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을 대다수의 연세 여성들이 겪고 있

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반성폭력적 담론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조건을 제공했고, 이것은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을 쉽게 제기할 수 없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연대에는 총여 이외에 여성자치단체들이 많이 존재하여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이 학생회를 통하지 않는 한 진행하기 힘든 사정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들이 진행할 수 있는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98년 사회대 beyond에서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운동을 제안하고 진행하였다.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운동은 소모임 단위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운동이고, 단대 혹은 과라는 기반이 있으면 더욱 활발히 진행할 수 있는 운동이다. 또한 단대 혹은 과, 동아리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치규약 만들기를 진행할 때 일상적인 성폭력(언어 혹은 시선폭력, 여성차별적인 비언어적 행동 등)에 대해 문제제기 하기가 학칙이나 학생회칙 보다 수월하다. 또한 끊임없이 버전업을 할 수 있고, 지속적인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반성폭력 담론을 형성하기에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와 같이 성폭력에 관한 담론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 반성폭력적 담론을 형성하기에 성폭력 학칙제정운동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자치규약 제정운동의 정의, 목적 및 대상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운동에서 말하는 '자치규약'은 학칙이나 학생회칙처럼 강제성을 띠는 규약이 아니라 동아리, 과, 단대 등에서 세미나나 회의 등 논의의 자리를 만들어 서로에게 요구하는 바를 언어화한 생활 규약 정도의 규약을 의미한다. 개인이 자신이 지킬 성폭력에 관련된 선언 혹은 규약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도 자치규약 제정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고, 2인 이상이 모인 공간이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운동의 목적은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반성폭력적 담론의 형성과, 이차적으로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생활 규약을 만들어 반성폭력적 담론의 지속과 성폭력의 예방을 확실히 한다는 것이다.

3. 자치규약 제정운동의 진행 방식

98년 연세대 사회대에서 진행되었던 '성폭력 자치규약 만들기'는 사회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우선 사회대 안에서 성폭력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차례의 공청회를 기획하여 사회대 안의 자치모임들과 과학생회들과 함께 사회대 성폭력 자치규약 자료집을 만들었다. 이를 책으로 발행하여 우선 사회대를 대상으로 배포하였으며, 올해 버전업 작업을 하려 한다.

성균관대 새터 성폭력 내규

1. 제기배경

성균관대는 아직 성폭력에 관련한 학칙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학내 기구들이 처벌, 강제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성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총여학생회로 접수되고 그 중 많은 사건들이 공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균관대는 기존의 왜곡된 성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해마다 여러 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새터에서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학생회의 첫 사업이면서 대중적으로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이 기간동안 폭력적인 성문화가 여과없이 새내기들에게 흡수되고 있으며 이것은 끈질긴 생명력과

재생산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총여학생회에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새터 성폭력 내규 제정 운동을 벌였다.

2. 정의 및 목적

'새터 성폭력 내규'(이하 내규)는 성폭력에 대한 예방에서부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해결안까지를 제시하였으며 여러 측면에서의 의의와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은 내규의 내용과 문제의식의 대중적인 공유로 성문화에 대한 점검과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성에 대한 관점을 올바르게 재정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성폭력을 방지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3. 진행과정

우선적으로 총여학생회에서 내규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였으며 이후 구체적인 내규의 조항을 만들었다. 내규의 내용은 다른 학교에서 제시한 성폭력 관련 학칙 가안과 거의 비슷하며 대상, 해결기구, 신고방법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해결방법을 살펴보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소속 학생회 대표 1인, 피해자 소속 학생회 대표 1인, 총여학생회 1인(명륜 캠퍼스, 을전 캠퍼스 각 1인씩), 총학생회 1인(명륜, 을전 각 1인씩)으로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등의 역할을 부여받은 공신력 있는 기구이다. 사건을 책임지는 이 기구의 구성원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직은 박탈하는 규정을 두어 좀 더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규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이후 명륜, 을전 총여학생회장단, 총학생회장단의 회의를 열어 일차적으로 검토한 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2차 검토를 하여 통과되었으며 이후 확대운영위원회의 논의안을 상정되었다. 그리고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진 후 명륜은 박수로, 을전은 거수로 통과되어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통과된 내규를 바탕으로 대중적인 공유와 문제의식의 전달을 위하여 단대 별 교양을 진행하여 내규의 공신력을 높였다. 하지만 학생회 활동가 소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새터의 준비과정, 방종이라는 한계성, 새내기들에게 충분한 교양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새터 기간에 팸지와 포스터를 제작하여 내규와 성폭력에 대해서 알려나가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서울대 성폭력 해방공간 선언운동

1. 제기배경

반성폭력 운동의 한 양태로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아쉽게도 법률의 제정이 갖는 한계를 필연적으로 내포한다. 그러므로 법률로서의 성폭력 학칙이 가지는 공백을 메꾸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①성폭력 상담실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②성폭력 상담실의 대중성 확보, ③학칙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지속적인 활동, ④학생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치적 역량과 고양시킬 수 있는 활동, ⑤'성적 소수자로서의 여성들' 사이의 강력한 연대, ⑥지속적인 여론전과 대중 활동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중 ①과 ②는 학칙제정을 위한 운동과정 속에서 기필코 달성해야 하나, 나머지는 학칙제정운동 만으로는 쉽게 담보할 수 없는 과제이며, 자칫하면 학칙제정의 무게에 눌려 간과될

수도 있어 반성폭력 운동의 급진적 합의를 상당부분 삭감시킬 위험이 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해서는 성폭력 학칙제정운동과 조금 다른 양태의 반성폭력 운동이 필요하다. 그 다른 양태는 바로 개개인의 의식의 변화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성폭력 근절이 하나의 당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폭력에 관한 성폭력적 담론이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규정도 '성폭력 근절'이라는 실질적인 목표에 접근할 수 없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행동하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학칙이나 자치규약은 유명무실해질 위험에 처한다. 따라서 대학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바로 성폭력 학칙의 주체가 될 이들이 성폭력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들을 만들어나갈 것을 자기 스스로의 입으로 약속해야 한다.

2. 정의, 목적 및 대상

성폭력 해방공간 선언운동은 모두가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든 종류의 성폭력에 반대하며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간을 성폭력으로부터 해방된 공간임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을 즉각 수행할 것임을 약속하는 행동양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 목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성폭력 해방공간 선언운동은 직접적으로 대학사회의 전 구성원이 주체가 되기를 지향하는 운동이다. 지금까지의 규약제정운동 내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언제나 가해자를 범죄자로 육하고 애써 자신과 분리해냄으로써 실질적으로 모두가 사회적 성폭력의 담지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말하자면 기존의 반성폭력 운동 속에서 가해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었고, 가해자만이 운동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다면, 성폭력 해방공간 선언에 있어서는 개인, 학생회, 학회, 동아리 등 다양한 수준의 주체들에게 스스로의 성찰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들의 발언과 정치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성폭력 해방공간 선언운동은 대중적인 논쟁을 통해 성폭력적 문화를 바꾸어가는 운동이다. 이전까지의 반성폭력 운동은 실제로 그 운동의 주체들-학생회나 여성모임-사이에서만 논쟁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성폭력 해방공간 선언운동은 총학생회가 붙인 커다란 대자보가 아니라 과방에, 날적이에, 동아리방에, 온라인 통신방에 개개인들이 붙인 선언문을 통해 대중적인 논쟁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공간의 논쟁의 소용돌이를 지향할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는 성폭력에 대해서 수세적인 대응만을 해 왔다면 성폭력 해방공간 선언운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즉 잠재적인 성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성폭력에 맞서는 투쟁을 선언하게 된다. 즉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야만 우리의 침해받은 권리를 되찾기 위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서 일상적인 성폭력을 반대하고 이를 제거한 대안적인 문화를 형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3. 진행과정

성폭력 해방공간 선언운동은 98년 9월 총학생회 성정치위원회에 의해 제안되었다. "당신이 주장하면 세상이 바뀐다! 당신이 행동하면 세상이 뒤집힌다! 당신에게 '성폭력 해방공간 선언운동을 제/안/하/나!'라는 구호가 쓰여진 제안서와 '우리의 대학을 성폭력 해방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고 선언한 선언문이 관악여성모임연대 명으로 제작, 배포되었다. 이후 여러 개인과 학회, 동아리의 이름으로 선언문이 작성되었고, 이것들은 통신공간과 관악여성모임 게시판 등을 통해 총화되었다. 총학생회에서는 백지 스티커를 제작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적어 여러 공간에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운동이 주장하는

바는 단순하고 명확했다. “당신과 당신의 모임이 성폭력적 사회 구조에 저항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생각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하시오!” 이것이 바로 성폭력 해방공간 선언운동의 전부였다. 관악여성모임연대의 제안서에서 제공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당신의 모임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 성폭력적 매체(신문, 방송 등)에 항의 편지를 쓴다.
-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과 토론자료를 제작, 배포한다.

2)당신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 자신의 주변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즉각 문제제기하고 사람들과 토론한다.
- 여자들이 때문에 시키는 일은 당연히 거부한다.
- 학생회칙 제정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 술자리에서 음란가요를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부르면 저지한다.

넷째 날

<별첨자료 1> 고대 법대 자치규약 가안

법대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치규약(가안)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자치규약은 고려대학교 법과 대학 내 성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통하여 학부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법대 내 성평등한 문화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폭력의 정의)

본 자치규약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없이 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상대의 신체에 음란한 접촉을 하는 것 등의 행위
2.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을 하는 것 등의 행위
3. 음란 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등의 행위
4. 팩스나 컴퓨터 등의 통신 수단으로 음란한 말이나 그림을 보내는 것 등의 행위
5. 기타 성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성에 기초한 것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발언

제3조 (의무)

법대 학부생은 법대 내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성폭력 사건 해결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본 자치규약은 법대의 모든 학부생들에게 적용한다.

제5조 (시효)

본 자치규약의 적용을 받는 성폭력 사건에는 시효를 두지 않는다.

제 2 장 사건의 해결

제6조 (해결의 원칙)

성폭력 사건의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제7조 (해결기구)

제1항 법대 내 성폭력 사건은 법대 학생회장, 법대 여학생회장, 반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단대 운영위원회에서 해결한다.

제2항 단대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해결기구의 임무)

해결기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사건의 조사와 중재
2. 가해자의 징계
3.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조치
4.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고
5.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9조 (해결기구의 소집)

해결기구는 성폭력 사건의 신고에 의해 소집된다.

제10조 (신고)

제1항 사건에 대한 신고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선정한 대리인, 피해 상황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다.

제2항 신고는 법대 여학생회나 법대 학생회에서 접수한다.

제11조 (피해자 보호)

제1항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소속, 기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2항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전항의 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3항 전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성폭력 사건을 허위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징계내용)

신고인과 증인의 보호에 대해서는 전조의 규정을 존중한다.

제13조 (징계내용)

제1항 성폭력 사건의 해결기구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성폭력이나 성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다.
2. 성폭력 상담소 등의 외부 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를 한다.
3. 실명 대자보, 언론 등을 통해 공개 사과를 한다. 단, 실명 사가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 해결기구의 결정에 따라 비실명 사과를 할 수도 있다.
4. 사안이 경미할 경우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5. 기타 해결기구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항 다음의 경우에는 가장 처벌한다.

1. 명백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경우

2. 징계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피해자나 신고인, 증인, 해결기구 등에 보복하는 경우

4. 재범, 상습범인 경우

제14조 (동조자에 대한 징계)

성폭력의 가해자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에 대해서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공고)

해결기구는 징계결과를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개 정

제16조 (발의)

본 자치규약의 개정은 법대 학부생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나 단대 운영위원회에 의해 발의된다.

제17조 (심의 및 의결)

제1항 개정안은 법대 학생총회에서 심의한다.

제2항 개정안은 법대 학생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학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자치규약은 통과하는 날로부터 1주일간의 공고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유권해석)

자치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기구에서 판단한다.

성폭력

<별첨자료 2> 성균관대 새터 성폭력 내규

성균관대 99년 새터 성폭력 내규

1. 목적

지난 몇 년간 새터를 보아오면서, 새터에서의 바람직한 성문화를 고민하였다. 음란한 가요 등으로 대변되는 집단적 성폭력에서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여학우는 물론이고 남학우들도 갖가지 성폭력에 무방비한 채로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 방법들은 소극적이고 미비하였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비판, 근절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잣대가 되어 줄 내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내규는 결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단순한 보복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해자의 처벌이나 죄에 대한 단죄를 넘어서 왜곡되고 비뚤어진 공동체 성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이로써 학생회 첫 사업인 새터에서 바람직한 대학문화를 보여주자는 것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 교양이나 내규의 여론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성의식(혹은 성문화)을 지적해 내고 올바른 성문화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 요구 및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인 행위이다.

새터에서의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었다.

1)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집단 내 집단인 경우, 혹은 집단 내 개인의 경우

① 음란가요를 부르는 경우

ex) 학내에 존재하는 음란가요는 다수 존재한다. 정려가, 삼신가 등등 거의 모든 단대에 하나씩은 꼭 존재한다.

② 특정한 이유없이 성행위를 몸짓 혹은 손짓으로 (소위)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경우

예) 노래에 맞추어 미음을 할 때 성기나 성행위를 상징하는 몸짓을 끼워넣는 경우

③ 단대, 학부 미팅에서 혼란 혹은 장기자랑을 할 때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언어폭력)을 하거나 성행위, 성기들을 흉내내는 경우

(99년) →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고함
→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고함

ex2) 아라라라
- 아라라!

예) 97년 새터에서 모 단대에서는 장기자랑 시간에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서 성기모양을 만들고 여학생이 가운데 앉자 암바사를 뽑으면서 사정하는 것을 흉내내었다. 그 상황에 있던 음전의 한 학우가 불쾌하다는 표시를 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재미있으면 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라고 하며 여학생의 반발을 무시했다.

② 새터미팅에서 사회자가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④ 술을 마실 때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적대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예) 억지로 술을 먹이려고 술을 따르라고 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함으로써 심의로 배제시키려는 경우

③ 공동의 공간에서 음란물, 사진 등을 부착하는 행위

→ ① 새터에서 방이름을 정하고 그 게시물을 꾸밀 때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예1) 몇년 전 실례를 들어보면 방이름을 정할 때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바다', '똥 따는 처녀'-따왔다 똥, 먹어봤나 똥, 누가봤나 똥, 나 오늘 똥 판다, 똥따다 욕봤다, 씨발 드디어 등, '바가지'-나 조때로 생각해, '매직스'-여자는 한달에 한번 마법에 걸린다, '白水落下'-성기를 그려놓고 사정하는 모습을 표현함, 이외에도 여러 개의 예가 존재한다.

예2) 97년 새터에서 실무단 여학생이 공지사항을 전하려고 방에 들어갔을 때 '여자다'를 연호하며 '웃벳어'라고 집단적으로 말하였다.

2)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자리에 앉게 하여 술을 따르도록 행위

② 신체적인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신체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접촉
- 원치 않는데도 신체 일부를 애무하거나 문지르는 행위 (입맞춤, 피로동, 편안)
-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암시, 요구하는 행위
- 손으로 성행위 등을 나타내는 몸짓을 하는 경우
- 기타 접촉, 성관계를 강요하는 일체의 물리적 혹은 신체적 행위

예) 97년 새터에서 모 단대에서는 신입생 남학생이 동기 여학우가 술에 취해서 잘 때 문을 열고 그 여학우를 강간하는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총여에 신고가 들어왔으며 단대와 총여가 공동의 테이블을 마련하여 사건에 대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③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 활동, 성감각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이야기하는 행위
- 성적으로 모욕하는 호칭의 사용
- 불쾌한 성적 농담 (농담의 내용이 왜곡된 성의식을 담고 있거나, 강간등을 주제로 하는 농담)
- 기타 상대방을 모멸감을 느끼거나 인격의 손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이 잠재된 언사

④ 적대적 환경 조성

- 음란하고 징그러운 눈빛, 결눈질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 음란한 쪽지, 편지를 보내는 행위

- 학생들을 위해
가능. 특히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학생들이~~ ~~학생들이~~
학생들 ~~학생들~~.

3. 의무

예) H_2O_2 분해반응 $\text{H}_2\text{O}_2 \rightarrow \text{H}_2\text{O} + \text{O}_2$ 반응속도 상수에 대한 단위를 구하라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새터에 참여한 구성원은 새터패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대상

새터에 참가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5. 신평과 신평기구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상황을 공감하는 주변인이 학교(과) 학생회, 단대 학생회, 총학생회, 신고함에 신고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고 피해자와 의지와 그 외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신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⁰¹²⁹

사건의 신고는 직접방문, 전화, 서면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한다. 신고기간은 재터 기간만이 아니라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심신의 후유증을 달고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함으로 시효 규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6. 피해자의 보호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고 범죄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주장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도 다른 범주의 사회적 불이익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용모, 소속,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
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
기를 힘들어 하는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아울러 성폭력 대책위는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였을 때에는 그 동조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87.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 1) 과(학부) 학생회장에 과내에서 집단적 혹은 개인적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논의의 테이블을 제안해야 한다.
- 2) 성폭력이 단대 학생회로 직접적인 제보가 들어올 경우 단대 학생회가 논의의 테이블을 제안해야 한다.
- 3) 신고함에 제보가 들어오거나 출여에 제보가 들어오면 출여학생회가 제보자가 되어 논의의 테이블을 제

2018 11월 15일

2. 등차의 수열
 등차의 수열의 항의 합을 구하는
 방법

-58- 7월 10일 1944년 10월 19일
 1944. 10. 19.

안해야 한다.

4)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와야 한다.

9. 8.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7월 11일 2월 14일 1월 14일 1월 14일 1월 14일
1월 14일 1월 14일 1월 14일 1월 14일 1월 14일

- 1) 새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단대 학생회(단대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학부(과) 학생회(학부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총여학생회(명문 총여를 대표하는 1인, 을전 총여를 대표하는 1인), 총학생회(명문, 을전 대표할 수 있는 각각 1인)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바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단위가 다를 경우 쌍방의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각각의 1인(가해자 소속, 피해자 소속)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온다. 24.46.644444 명문, 을전

24.4도 낮아졌을 정도로 매우 추운 1월 4일

- ③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제해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 타인의 타자

- 성폭력 사건의 조사, 증거 및 사후처리
 -가해자 징계 및 재교육
 -피해자 보상과 치료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개

재 및 사후처리
(2) 유족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유족자가

- 4) 성폭력 사건 대책위 위원들이 사건을 누설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에 한해서 위원직을 박탈한다.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에 한해서 위원직

- 5) 집단적 혹은 개인적인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의 원칙
- ① 성폭력 사건 대책위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와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징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② 공식적인 사과(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혹은 전체를 대상으로)를 받아내야 한다. 과(학부)장, 단대장의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시키려는 경우 그에 대한 사과 대자보를 붙여야 한다. *발언대, 그것을 받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한이 깊어진다.*
 - ③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 ④ 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처벌을 가해자에게 가한다.
 - ⑤ 가해자들은 처벌 이후 추후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발견과, 가장 중요한 점은
다 발견과 가장 중요한 점은
중요한 점은.

10. 9. 집계내용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내린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문화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세미나
-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사과 대자보
-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듣는 재교육
- 성폭력 상담소 등의 외부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가해자 접근 금지

* 477 2000년 1월 1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수업 15분 10월 27일 15분 10월 27일

1. 이차식과 기차 기차
 ① 이차식의 근의 공식
 [이차식의 근의 공식]

2. სმელ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აღიშნა.

① 1402 042 000000-7242

② Mg^{2+} H_2O OH^-
 $\rightarrow$ $\text{Mg}(\text{OH})_2$ H_2O

③ Mg හි CO_2 වලින් MgO බවට
උත්ඵලය ලබාදීම.

④ 24의 약수 322-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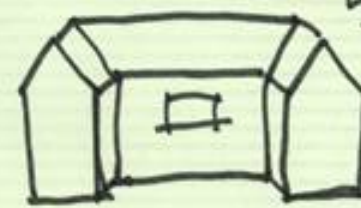
3. Utas: 1234567890

① Mn^{2+} 이온 산화되므로 X.
 Fe^{2+} 의 산화-산화전환 반응은 Fe^{3+} 로 H_2O_2 와 H^+ 가
 개입하여 Fe^{3+} 로 H_2O_2 가 산화된다.

2

[illegible]

अथवा



Sewa

Sung Moon Young ^{Young} Marxism
9/2/2011

五五五

feminism

milky milky
milky

44

Porno रे
lady रे

비밀
비밀

all day all
day

♀